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2.1 도시일반현황

2.2 관련계획 검토

2.3 교통약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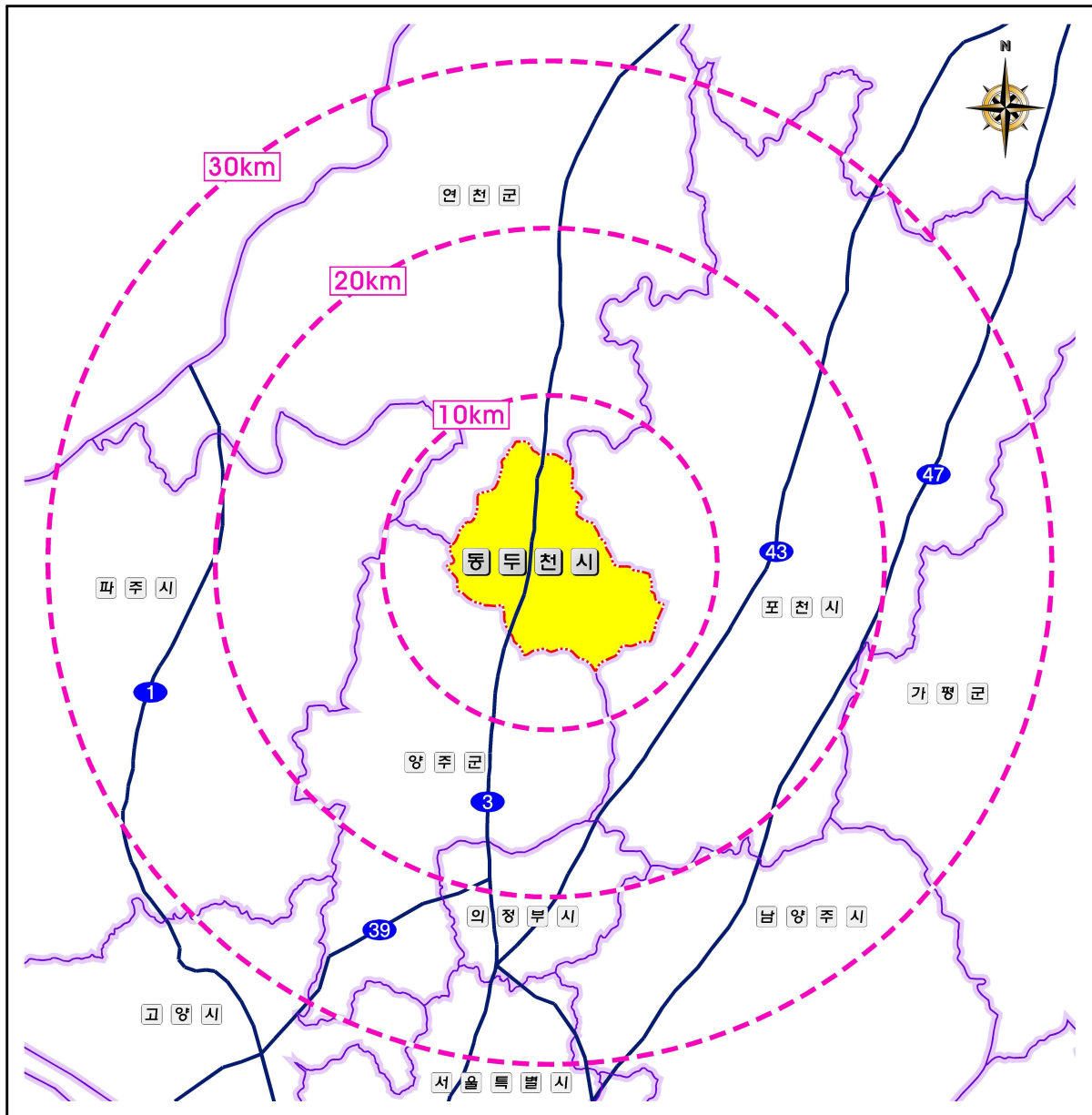
2.4 교통약자 예측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2.1 도시일반현황

2.1.1 동두천시의 위치

- 동두천시는 경기도 북측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측으로 포천시와 위치해 있으며, 남측은 양주시, 서측은 파주시, 북측은 연천군이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 동두천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95.7km²로 전국면적의 약 0.1%, 경기도면적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8개 동지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2-1> 동두천시 위치도

2.1.2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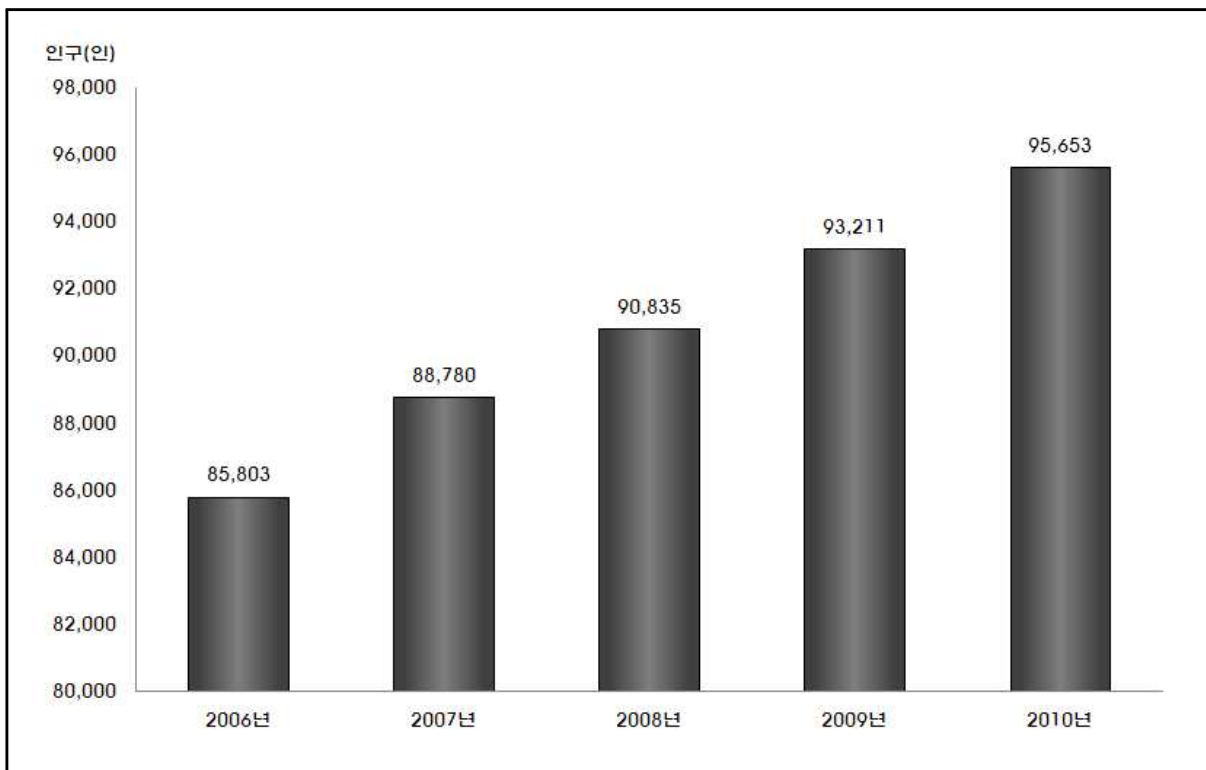
가. 인구현황

- 동두천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 85,803인에서 2010년 95,653 인으로 2006년 대비 9,850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세대당 인구는 2006년 2.6인/세대에서 2010년 2.4인/세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동두천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연 도	인 구 (인)	세 대 수 (세대)	면 적 (km ²)	인 구 밀 도 (인/km ²)	세 대 당 인 구 (인/세대)
2006년	85,803	32,919	95.7	897.0	2.6
2007년	88,780	34,671	95.7	928.1	2.6
2008년	90,835	36,727	95.7	949.6	2.5
2009년	93,211	37,832	95.7	974.4	2.5
2010년	95,653	39,915	95.7	999.9	2.4
증가율(%)	2.8	4.9	-	2.8	-2.1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그림2-2> 동두천시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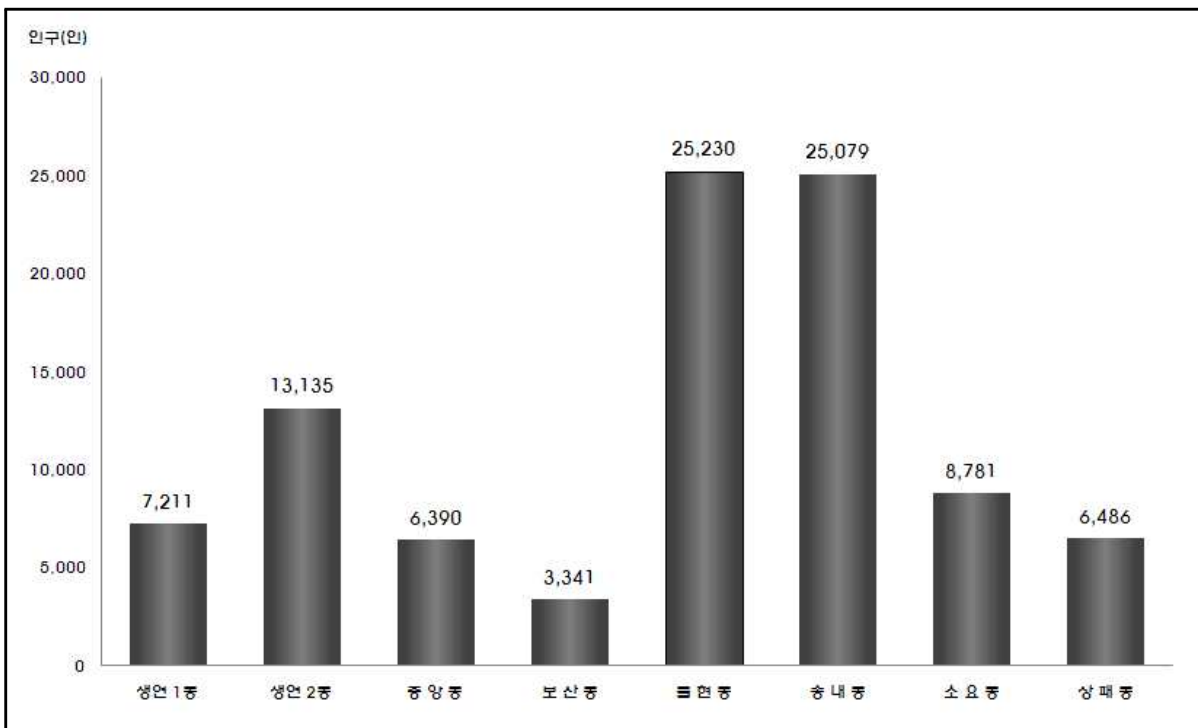
나. 지역별 인구 현황

- 동두천시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불현동이 25,230인(26.4%)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지역별 인구 및 세대수 현황(2010년)

구 분	인 구		세대수 (세대)	면적 (km ²)	인구밀도 (인/km ²)	세대당인구 (인/세대)
	합계(인)	구성비(%)				
생연 1동	7,211	7.5	3,010	2.2	3,338.4	2.4
생연 2동	13,135	13.7	5,252	0.7	18,243.1	2.5
중 앙 동	6,390	6.7	3,369	0.9	7,517.6	1.9
보 산 동	3,341	3.5	1,776	13.7	244.2	1.9
불 현 동	25,230	26.4	10,050	33.4	756.1	2.5
송 내 동	25,079	26.2	9,395	5.5	4,543.3	2.7
소 요 동	8,781	9.2	3,953	31.3	280.5	2.2
상 패 동	6,486	6.8	3,110	8.1	805.7	2.1
동두천시 전체	95,653	100.0	39,915	95.7	999.9	2.4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그림2-3> 동두천시 동별 인구 현황(2010년)

다.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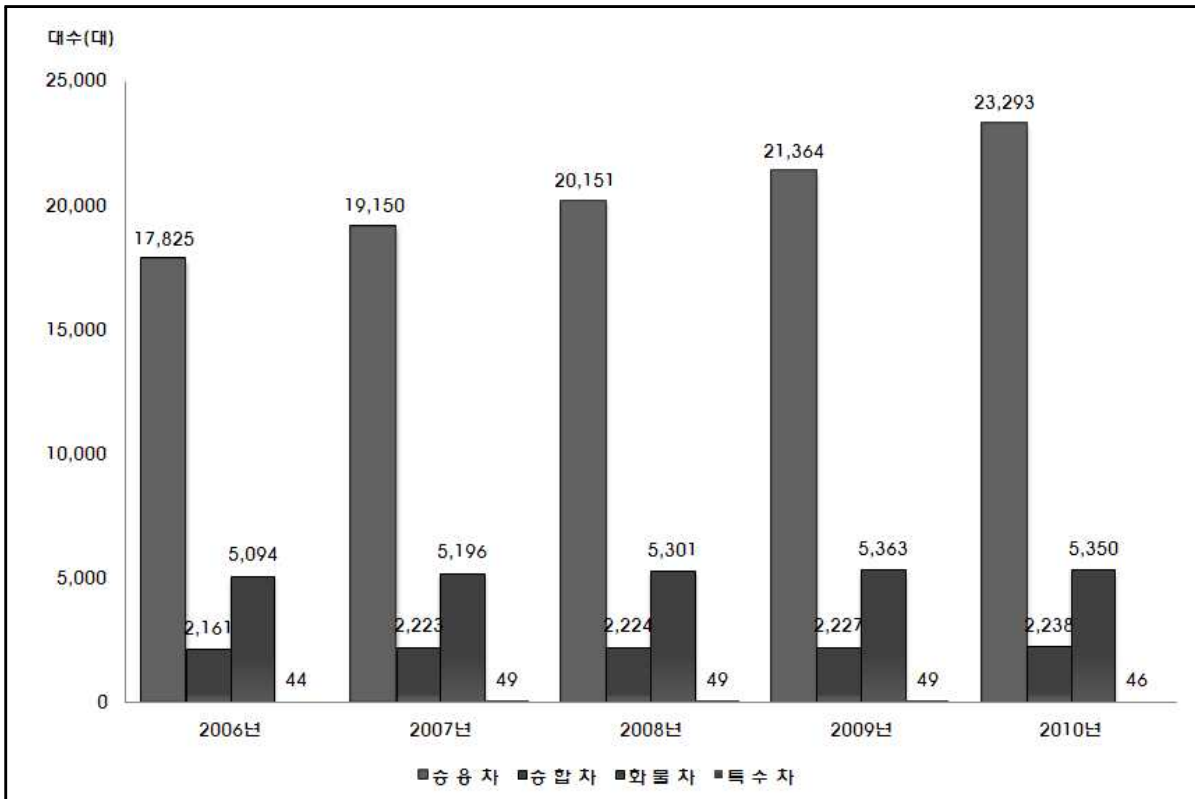
- 동두천시 자동차등록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5,124대에서 2010년 30,927대로 5.3%가 증가하였다.

<표2-3> 동두천시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

연 도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006년	25,124	17,825	2,161	5,094	44
2007년	26,618	19,150	2,223	5,196	49
2008년	27,725	20,151	2,224	5,301	49
2009년	29,003	21,364	2,227	5,363	49
2010년	30,927	23,293	2,238	5,350	46
구성비	100.0	75.3	7.2	17.3	0.2
증가율	5.3	6.9	0.9	1.2	1.1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그림2-4> 동두천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라. 주차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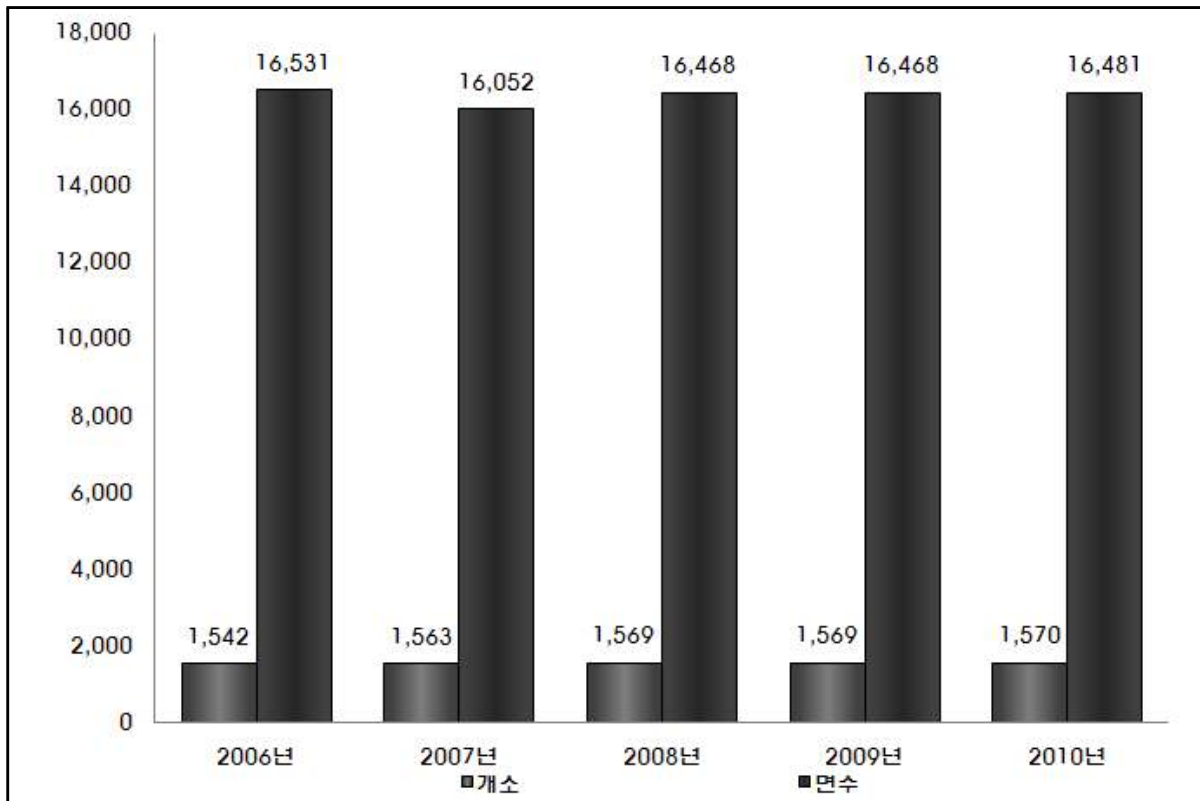
- 동두천시의 주차장은 2010년 총 1,570개소 16,481면이며 그 중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1,491개소 12,626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다.

<표2-4> 주차장 현황 종합

(단위:개소,면수,%)

연도	합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공 영		민 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06년	1,542	16,531	38	814	20	2,075	15	736	1,469	12,906
2007년	1,563	16,052	38	834	19	1,856	15	736	1,491	12,626
2008년	1,569	16,468	38	834	22	2,063	18	945	1,491	12,626
2009년	1,569	16,468	38	834	22	2,063	18	945	1,491	12,626
2010년	1,570	16,481	38	834	22	2,063	19	958	1,491	12,626
구성비	100		4.8		11.6		5.4		78.2	
증 가 율	0.5	-0.1	-	0.6	2.4	-0.1	6.1	6.8	0.4	-0.5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그림2-5> 동두천시 주차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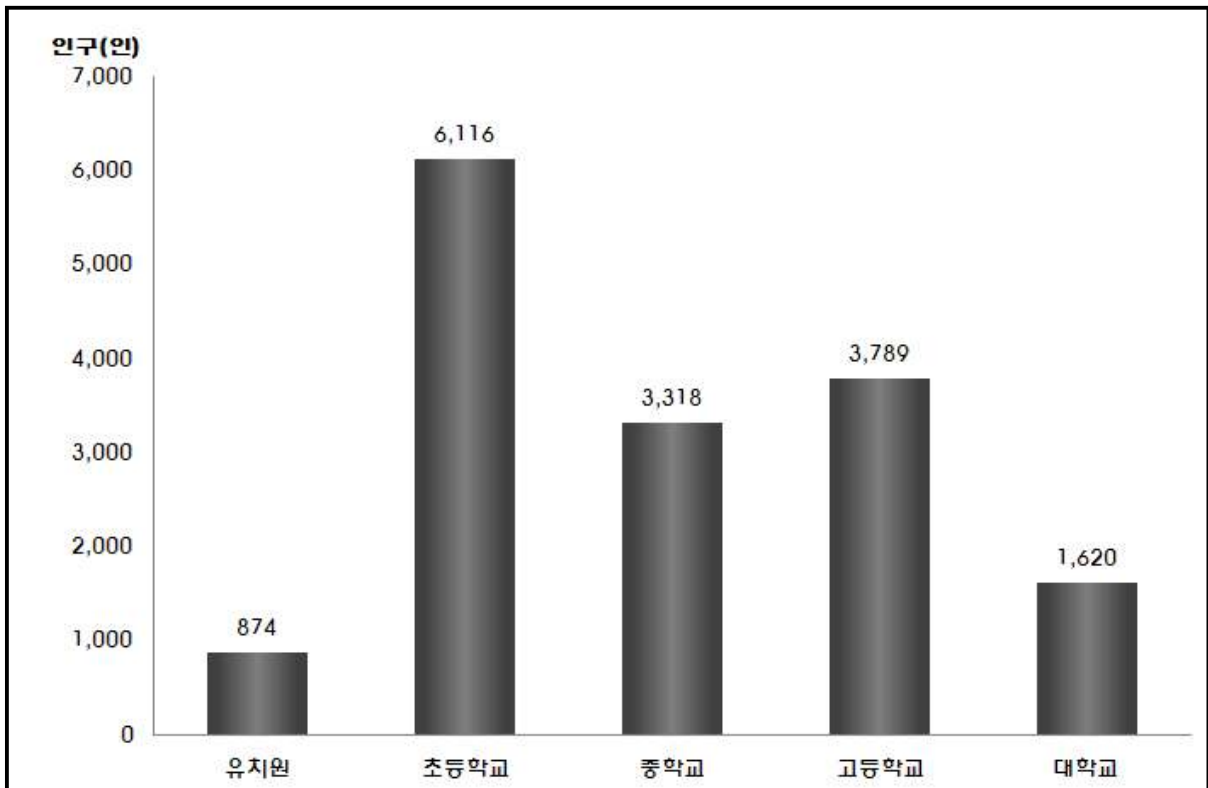
바. 학교 및 학생수 현황

- 동두천시의 학교 및 학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학교 42개소에 15,717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으며,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6,1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학교 및 학생수 현황(2010년)

구 분	학교수 (개소)	학급수 (학급)	학생수(인)			교원수(인)	교원1인당 학생수
			계	남	여		
유 치 원	20	46	874	442	432	61	14.3
초 등 학 교	11	224	6,116	3,148	2,968	319	19.2
중 학 교	4	60	3,318	1,709	1,609	109	30.4
고 등 학 교	6	117	3,789	1,801	1,988	277	13.7
대 학 교	1	15	1,620	855	765	60	27.0
합 계	42	462	15,717	7,955	7,762	826	19.0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그림2-6> 동두천시 학교별 학생수 현황(2010년)

사. 토지이용현황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동두천시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95.7km²로 전체 면적 중 임야가 64.8km²(6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2-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2010년)

(단위 : km², %)

구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계
면적	7.2	3.0	4.7	64.8	16.0	95.7
구성비	7.5	3.2	5.0	67.7	16.6	100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2)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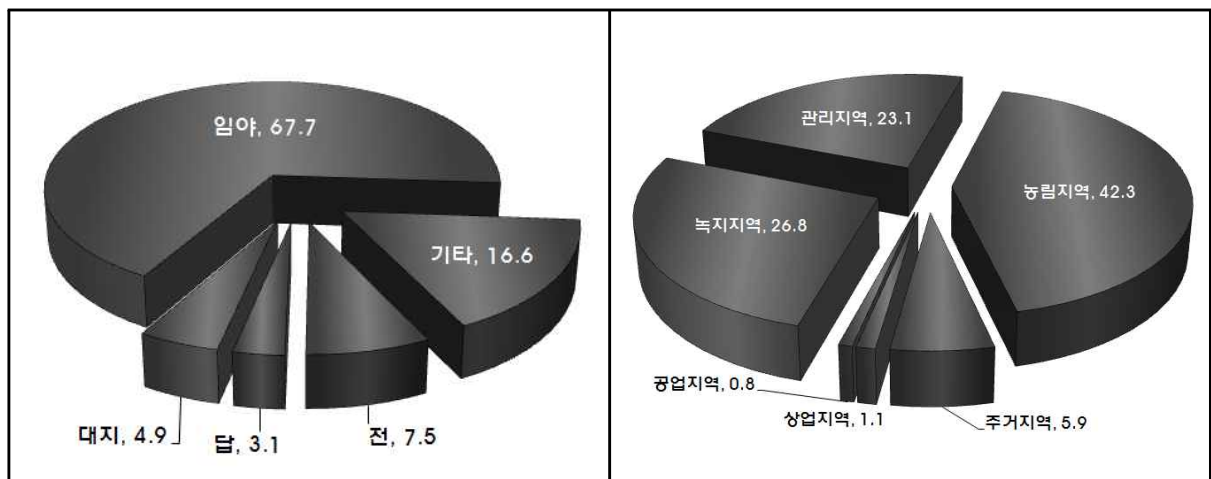
- 동두천시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5.7km² 중에서 농림지역이 40.5km²(42.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이 25.6km²(26.8%), 관리지역 22.1km²(23.1%)순으로 나타났다.

<표2-7> 용도지역 현황(2010년)

(단위 : km²,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	계
면적	5.6	1.0	0.8	25.6	22.1	40.5	0.0	0.0	95.7
구성비	5.9	1.1	0.8	26.8	23.1	42.3	0.0	0.0	100

자료 : 동두천시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그림2-7> 동두천시 지목별 · 용도지역 현황(2010년)

2.1.3 교통약자 관련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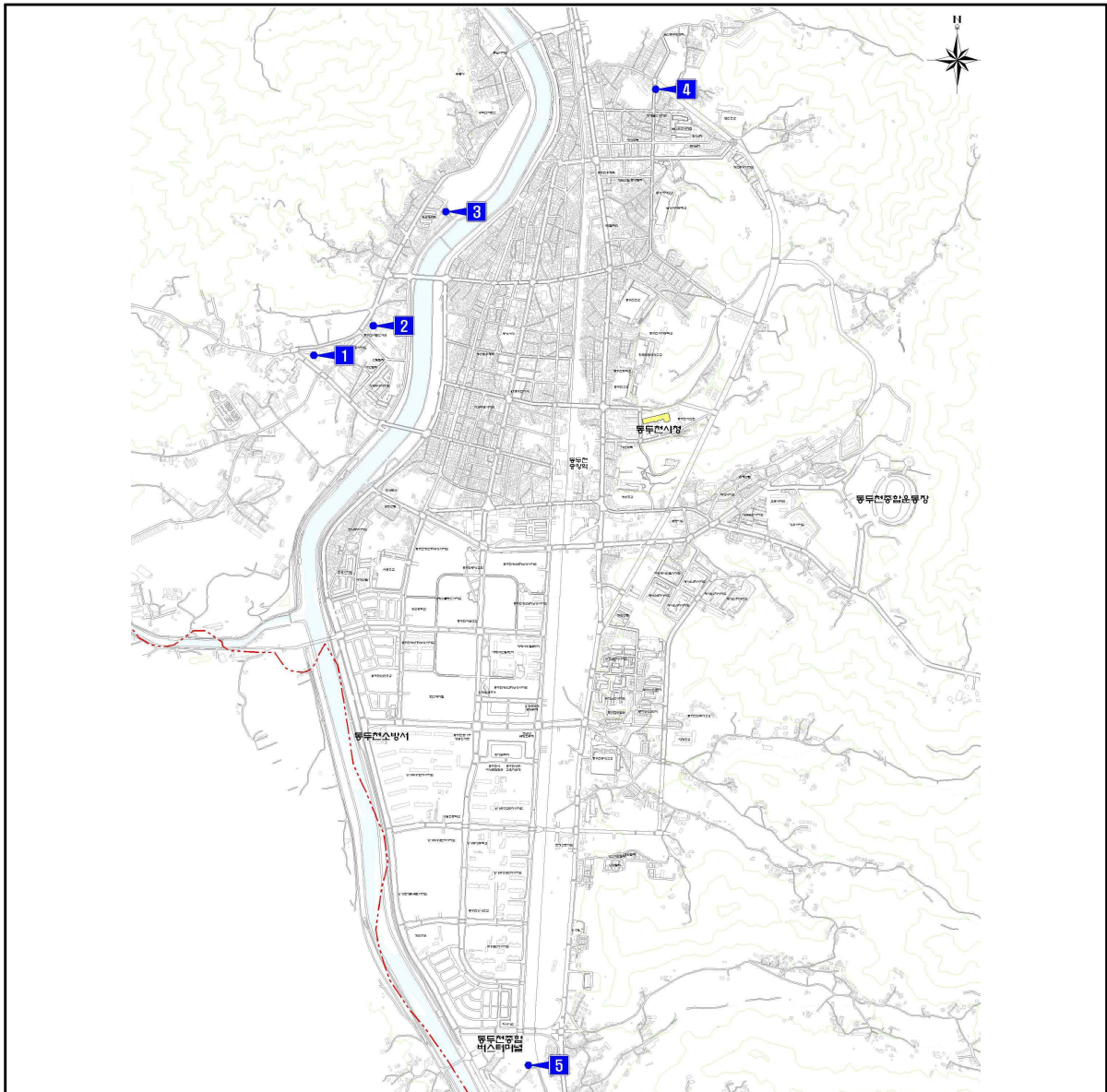
가. 장애인복지시설

- 동두천시 장애인 단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시설 7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표2-8> 장애인단체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생연동 611-4
②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상패동 54
③	한국장애인부모회 동두천지부	상패동 27-2
④	경기도 농아인협회 동두천지부	보산동 387-1
	동두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보산동 387-1
	동두천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보산동 387-1
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	송내동 555-3

자료 : 동두천시 내부자료



<그림2-8> 동두천시 장애인 단체시설 현황

나. 교통약자 관련 학교 현황

1) 유치원 운영현황

- 동두천시의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공립은 11개소 유치원사립은 9개소로 총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2-9> 유치원 운영현황

구분	원 명	소 재 지	구분	원 명	소 재 지
①	사동유치원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65	⑪	숲속연세유치원	동두천시 생연동 14
②	동두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평화로 590	⑫	예림유치원	동두천시 보산동 408-8
③	보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보산2길 37	⑬	풀잎유치원	동두천시 생연동 180-2
④	생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생골길 31	⑭	해바라기재능유치원	동두천시 생연1동 106-1
⑤	동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원터길 39	⑮	효성유치원	동두천시 중앙동 613
⑥	지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행선로 31	⑯	파랑새유치원	동두천시 지행동 327
⑦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새싹1길 12	⑰	소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봉동길 110
⑧	송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중앙로 62	⑱	탑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광암로 397
⑨	이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두천시 지행동 717-7	⑲	연화유치원	동두천시 상봉암동 83-1
⑩	신흥유치원	동두천시 생연동 511-1	⑳	혜성유치원	동두천시 상패동 201-6

자료 : 경기도 동두천교육지원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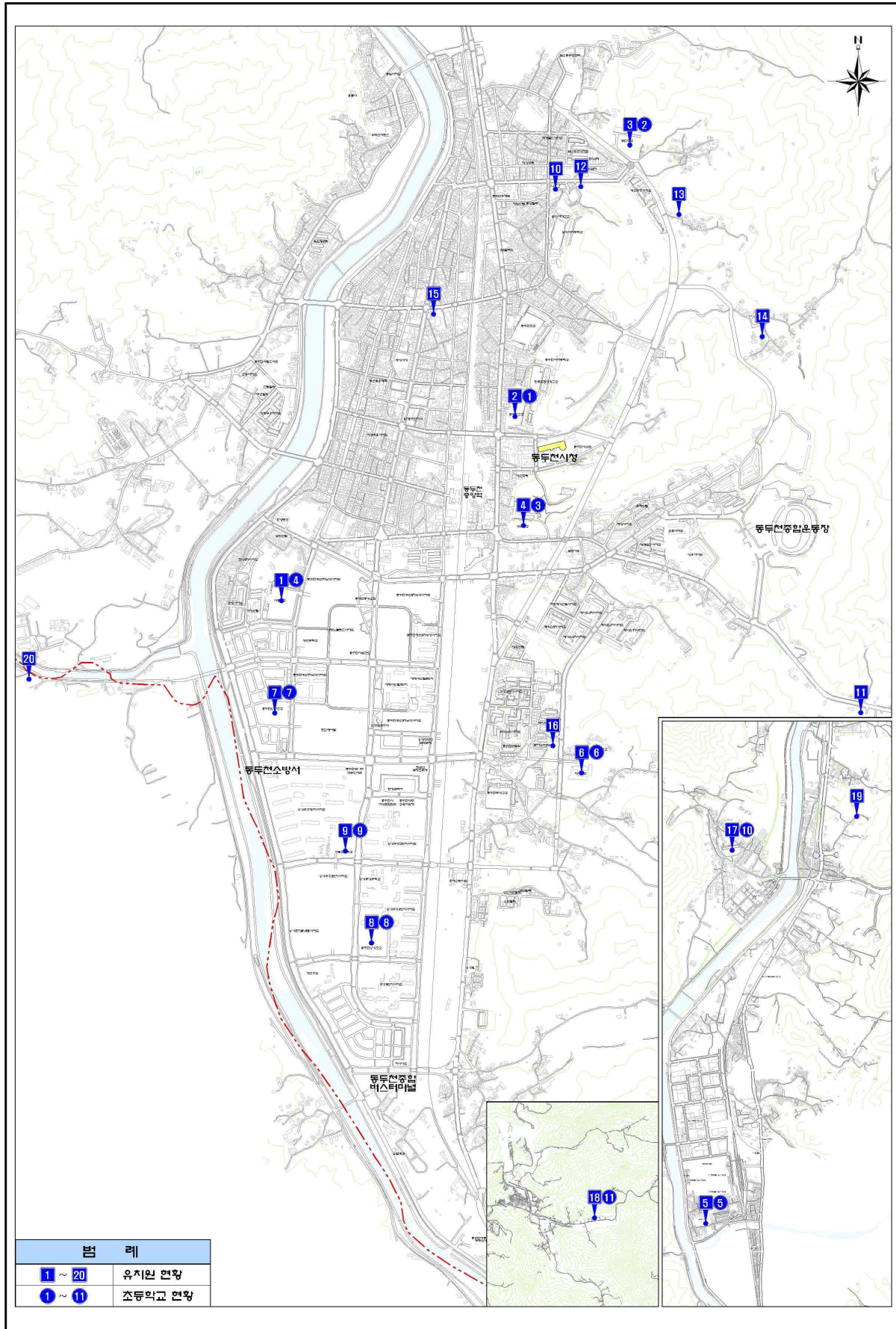
2) 초등학교 운영현황

- 동두천시 초등학교는 공립 11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표2-10> 초등학교 현황

구분	원 명	소 재 지	구분	원 명	소 재 지
①	동두천초등학교	동두천시 평화로 590	⑦	동두천신천초등학교	동두천시 새싹 1길 12
②	보산초등학교	동두천시 보산2길 37	⑧	동두천송내초등학교	동두천시 중앙로 62
③	생연초등학교	동두천시 생골길 31	⑨	이담초등학교	동두천시 지행동 717-7
④	사동초등학교	동두천시 거북마루 1길 42	⑩	소요초등학교	동두천시 봉동길 110
⑤	동보초등학교	동두천시 원터길 39	⑪	탑동초등학교	동두천시 광암로 397
⑥	지행초등학교	동두천시 행선로 31			-

자료 : 경기도 동두천교육지원청 내부자료



<그림2-9> 동두천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현황

2.2 관련계획 검토

2.2.1 국가계획

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년 ~ 2016년)

1) 비전

비 전	●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
------------	---------------------

2) 기본목표

기본목표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지방계획 실효성 제고
	● 국가와 지자체 간 연계성 확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인식제고

3) 지역별 · 시설별 최종 차등목표치

수단 및 시설	지역별	목표치				
		설치율	만족도	종합점수	비고****	
교통수단	일반버스	서울	75	75	75	68
		광역시*	75	75	75	
		기타 도	65	75	68	
		평균	72	75	73	
	저상버스 내부편의시설	공 통	100	80	90	85
	도시철도 및 전철	서울	100	85	96	84
		광역시	100	85	96	
		평균	96	85	93	
	철도**	공 통	100	80	94	84
	여객선**	공 통	60	75	65	29
항공기**	공 통	100	90	97	88	

주 1 : 광역시*는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

주 2 : 교통수단 중 철도**, 항공기**, 여객선**은 지역별 차등이 의미가 없으므로 공통 목표치 제시

주 3 : 공항***과 여객선터미널***은 국제선 및 국내선으로 구분하여 차등 목표치 제시

주 4 : 비고****는 201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임

<표 계속>

수단 및 시설	지역별	목표치			비고****	
		설치율	만족도	종합점수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서울	75	75	72	47
		광역시	70	75	72	
		기타 도	65	75	68	
		평균	70	75	72	
	도시철도 및 전철 역사	서울	95	85	92	74
		광역시	90	85	89	
		평균	93	85	90	
	철도 역사	서울	90	85	89	69
		광역시	85	85	85	
		기타 도	80	85	82	
		평균	83	85	84	
	공항***	국제공항	95	90	94	75
		국내공항	85	90	87	
		평균	90	90	90	
	여객선 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75	80	77	62
		국내여객선터미널	75	80	77	
		평균	75	80	77	
	버스정류장	서울	75	80	77	43
광역시		65	80	70		
기타 도		55	80	63		
평균		65	80	70		
보행환경	보 도	서울	100	85	96	74
		광역시	90	85	89	
		기타 도	80	85	82	
		평균	86	85	85	
	기타보행	서울	80	85	82	59
		광역시	73	85	75	
		기타 도	60	85	68	
		평균	71	85	75	

주 1 : 광역시*는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

주 2 : 교통수단 중 철도**, 항공기**, 여객선**은 지역별 차등이 의미가 없으므로 공통 목표치 제시

주 3 : 공항***과 여객선터미널***은 국제선 및 국내선으로 구분하여 차등 목표치 제시

주 4 : 비고****는 201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임

4) 중점과제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개선 및 확충 • 지역별·시설별 목표치 차등화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보급확대 • 특별교통수단 보급확대 • 지역적·계층적 형평성 제고 ●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시설 개선·확충 •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 • 속도, 통행, 주차 제한 규제 ●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마련과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저상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정성적평가의 계량화 방안
------	--------------------------------------------------------------------------------------------------------------------------------------------------------------------------------------------------------------------------------------------------------------------------------------------------------------------------------------------------------------------------------------------------------------------------------------------------------------------------------------------------------------------------------------------------------------------------------------------------------------------------------------------------------------------------------------------------------------------------------

나. 제3차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년 ~2014년)

1) 기본방향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증진으로 통합적 사회환경실현
-----------	-----------------------------------------------------------------------

2) 추진목표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율 88%, 적정설치율 70% -공공기관 설치율 95%, 적정설치율 85%
-------------	---------------------------------------------------------------------------------------------------------------

3) 추진방향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정성 확보 ● “무장애”건축물의 보편화 추구
-------------	---------------------------------------------------------------------------------------------

4) 추진과제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 교육환경의 편의증진 ● 작업환경의 편의증진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 문화생활시설의 편의증진 ● 제도 및 법령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심사 강화 ● 편의 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 RF인증제도 활성화 ● 기술 개발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 표준도 제작 및 배포 ● 장애인 재난방지 시스템 개발 ● RFID적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 편의시설 자동체크 시스템 개발 ●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증진관련 종합정보 제공 ● 인식개선 강화 ● 정책 홍보 실시
-------------	--------------------------------------------------------------------------------------------------------------------------------------------------------------------------------------------------------------------------------------------------------------------------------------------------------------------------------------------------------------------------------------------------------------------------------------------------------------------------------------------------------------------------------------------------------------------------------------------------------------------------------------------------------------------------------------------------------------------------------------------------------------------------------------------------------------------------------------------------------

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2015년)

1) 기본방향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

2) 정책목표

시 기	추진목표
제1차('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16~'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3) 중점추진과제

- (저출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령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
 -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
- (성장동력)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통해 인구변동에 선제적 대응
 -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 (홍보·재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 재원조달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추진

4) 과제의 범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사회·경제 전반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영향이 복합적, 광범위하여 단일계획 또는 정책만으로는 한계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사교육 부담 해소에 긍정적 영향
 - 주택시장 안정은 결혼·출산의 장애요인 해소에 기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각 분야 국가 계획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라.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

1) 기본방향

기본방향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	------------------------------

2) 분야별 계획

장애인 선진 복지화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도입 검토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근로자 증가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보육,교육 지원 강화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체육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 저상버스 도입 확대

3) 세부추진방향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
- 일자리 창출, 사전예방적 투자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 및 전달체계의 정비
 -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
 - 정부·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실효성 담보
 - 모든 과제를 포함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목표 달성도의 효과적 측정을 위하여 추진 목표 설정시 계량화된 지표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4) 분야별 계획

(1) 장애인 복지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판정기준을 마련
 -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강화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기회 부여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
-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 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2) 장애인교육문화

- 장애아동 보육·교육지원 강화
 -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및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진단·배치체계 구축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지원확대
-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보제공 시스템(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구축

(3) 장애인경제활동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중증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 재설계
-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 정부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등 확대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능력 개발 확대
-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
 -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4) 장애인사회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 등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공적급여 지급품목을 확대
 - 보조기구 기술이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전지원 및 지도
- 저상버스 도입 확대
 -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14,500대)를 휠체어와 유모차의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5)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장애인등록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 체계연구 (‘08-’09) -전달체계 개편 본격실시 및 보완추진 (‘10-’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 ※3개소(‘08)→6개소 확대(‘09)→개편 전국시행(‘10)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보 -사례관리체계 통해 고객(장애인)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기초장애 연금제도 도입추진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 준비(‘09)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방안 국회보고 (‘10)	-지원대상: 563,525명(‘08)→682,719명(‘10) →826,090명(‘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및 소득상실 보전 현실화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장애인 장기 요양보장 제도 도입 검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요양제도에 관한 조사·연구(‘09) -실시모형 개발, 모의적용 실시(‘09-’10)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6개지역-900명 대상 (‘09)→8개지역-1,200명대상(‘10) →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 발굴(19세-64세)(‘11-’12)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장애인가구 부담경감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검토(‘08-’12)	-다가구매입 공급계획: 6,500호(‘08)→6,500호(‘10)→ 65,00호(‘12) -기존주택전세 공급계획: 5,800호(‘08)→5,800호(‘10) →5,800호(‘12)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와 연계된 주거서비스 향유 가능 -편의시설 무료설치 가능하여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장애아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 -장애아동의 언어, 자폐, 인지, 행동 등에 대한 재활치료 등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 도입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를 국가가 지원	-미래의 사회적위험(부양 상실)에 대한 안전망 제공 -부양가족의 납입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
의료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08) -장애아동 치료서비스 지원(‘09-’12) -시도별 재활병원확충	-지역 재활병원 건립지원 등을 통해 재활서비스 지역적 불균형 해소 -장애아동(만18세미만) 치료지원율: 10천명 (12%.’09)→25천명(30%.’12) -재활병상충족률: 4,950병상(17.6%.’08)→5,550병상 (19.8%.’12)

<표계속>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 발생 예방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청각선별 검사 무료추진('09부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 43종 이상으로 확대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정신지체 및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인구 자질 향상 도모 -장애로 인한 사회 간접 부담 경감
후천적 장애 예방 및 재활 교육 시스템 전문화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 설치 : 재활전문요원교육,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훈련 등 -장애예방 네트워크 구축 위한 장애 예방 위원회 및 장애예방 센터 설립	-교육훈련사업 확대 개편을 통한 교육훈련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장애발생에 관한 기초 통계 생성 및 장애예방 기능 효율적 관리, 촉진
장애인 주거 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09년)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현 다원화 주거서비스체계 일원화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강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성년후견 서비스 도입	-기존법률안, 법무부안 등 종합 검토('08) -보건복지분야 지원내용 연구('09) -보건복지부안, 법무부 제출('10)	-장애인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 신상관리 등 성년후견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응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권과 생활보호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활동 내실화 -장애인 전담 상담소·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기능 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 전담 센터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1개소 → 12개소('12)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대 : 4개소('08) → 5개소('12)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전담센터 확대 : 3개소('08) → 17개소('12) -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향상 효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보훈의료시설의 건립 및 의료서비스 지원수준 제고 -재활시설 건립 및 신체기능 회복 위한 재활활동 지원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참가 지원	-3차병원 수준의 보훈중앙병원 건립(1,400병상 규모)('05-'10): 보훈의료의 최종의료기관으로 육성 -보훈병원시설·병상 및 위탁진료시설의 확대로 진료 편의 제고 -종합재활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 건립('09년까지) -상이군경복지회관(16개)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 및 물리치료사 역할 제고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국제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보훈보상금 인상('08-'12) -간호수당 인상('08-'12)	-상이1급1항 보상금 인상률: 6.1%('08)→5.6('10)→4.0('12) ※1급1항 국가유공상이자: 307명 -1급상이자 보상율: 96.5%('08)→100%('12) -간호수당 매년 3%씩 인상 -적정한 보상의 실현으로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안정 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에 기여

마.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년~2016년)

1) 기본방향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대중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 제공
-----------	---------------------------------------------------------------------------------

2) 기본목표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관리 강화 ●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

3)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추진전략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과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으로 서민과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제고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등 추진 • 교통약자 접근시설 개선 및 보행동선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 및 사업 시행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4) 교통약자 지원 추진계획

추진과제	단기(2012~2016)	장기(2016~2030)	지속(2012~)
○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지속 추진			
○ 저상버스 보급 확대(2012~2016)			

바.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년~2016년)

1) 기본방향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평균 교통안전도 달성
----	----------------------------------------------------------------------

2) 분야별 목표

추진목표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40%까지 감소시켜 OECD 10위권 진입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목표) 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 선진국 수준 유지 ● (정량적 목표) 열차 1억km당 사고발생건수 10% 감축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지난 5년 평균('07~'11년) 대비 항공기 사망사고 및 비사망사고·준사고의 발생건수 20% 감축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까지 해양사고 사망·행방불명자수 6% 감축

3) 분야별 계획지표

계획지표	2010년	2016년	2021년
도로	- 주지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	1.3
	- 교통사고 사망자수	5,505	3,000
	-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	2,082	900
	-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979	440
철도	- 주지표 :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	0.22	0.18
	- 10억km당 열차사고건수	10.9	9.7
	- 10억km당 사망자수(자살제외)	42	37
	- 대형철도사고 미발생(5년 누계)	-	-
항공	- 10만 비행횟수당 사망사고율	0.064	0.025
	- 10만비행횟수당 비사망사고·준사고율	2.758	1.908
해양	- 해양사고 사망·행방불명자수	176	122
	- 1만척당 사망·행방불명자수	19.94	14.21

4) 추진내용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 감소
 - 통학로별 위험지점에서의 안전한 등·하교 방법 교육 매뉴얼 작성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 교통안전교육 수업이수 연간 12시간 이상 실질적 확보
 - 시·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지원 및 운영
 - 교통안전 전문 교육강사 양성·확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내실화(~'13)
 -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지원('14년)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 사망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음주,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해 벌점 및 범칙금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검토
 - (면허정지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시 면허정지 해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부, 지자체)
 - 철도 역사·선로 등 철도 시설물 보안강화(운영기관, 국토부)
- 교통안전, 보행 홍보·교육의 다각화
 -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국토부 등 관계기관)
 - 인터넷 등 홍보매체 다각화(국토부 등 관계기관, 연중)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국토부 등 관계기관, 연중)
 - 정부, 민간기업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TV 공익광고 등)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12~'16년)
 - 보행우선구역 지정·운영 확대('12)
 -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12년~)
 -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13년)
 -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 지명수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 야간·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 마을 진·출입도로의 안전성 강화

○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기준 마련('13~)
- 안전표지 도입 및 시인성 제고 등('12~)

○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 협의회 구성, 법령개선 등을 통해 '16년까지 심층적 교통안전정보 제공 및 이용효율성 증대
- 국가 교통안전정보 수집의 활성화
- 교통안전관계자, 대국민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3) 스마트 교통 수단의 운행

○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보급 확대

-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4) 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 (보조간선도로) 원칙적으로 60km/h 이하로 규정
- (생활도로)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
- (가변속도제한 시스템 구축) 악천후, 교통혼잡, 사고발생시 위험내용 및 수준에 따라 최고 제한속도 및 권장속도 제한
- (교통사고 잦은 도로) 현행 제한속도에서 최소 10km/h 이상 하향 조정 및 속도단속시스템 중점 설치

○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
-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 도입·확산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구축

- 사고발생시 응급사고 처리를 위한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 지정체 구간 응급통로 확보대책 수립 및 기상변이구간의 응급구조체계 선진화
-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운행예정지역에 대한 도로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
 - (운전자) 안전 운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 (도로관리자) 도로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 제공
 - (1단계) 도로 노면 및 대기 상태를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로 기상관측 시스템 개발
 - (2단계) 관측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및 대기 상태 예측시스템으로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아. 제2차 동두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년~2016년)

1) 세부목표 설정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이동성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속성 확보 - 버스전용차로설치, 버스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 시책의 추진 ○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개발 ○ 대중교통 서비스의 정시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안내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만해소 - 대기시간의 최소화 ○ 차내혼잡 해소를 통한 쾌적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내 불편을 최소화 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 확보
-------------	--------------------------------------------------------------------------------------------------------------------------------------------------------------------------------------------------------------------------------------------------------------------------------------------------------------------------------------------------------------------------------------------------------------------------------------------------------------------------------------------------------------------------------------------------------------------------------------------------------------------------------------------------------------------------------

2) 정책목표별 지표설정

구분	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중교통 서비스	최소 대중교통서비스 빈도(회/노선)	11노선
	운행 서비스 시간	규칙
	노선의 중복도(%)	15.0이하
대중교통 시설	버스표지판 설치	85
	정류장 노선안내도 확충 및 개선(개소)	113
	레드존 설치	125
	정류장 쉼터 확충(개소)	39
	환승거점 추가확보(개소)	1
BIS 구축	버스정류장 단말기 설치(개소)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도입(대)	2

자. 제2차 동두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1) 기본방향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과 기쁨이 있는 녹색 교통안전도시("Do Green Dongducheno")
-----------	--------------------------------------------------------------------------------------------------

2) 기본목표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64명 감축(2016년까지 2.32명)
-------------	---------------------------------------------------------------------------------------------------

3) 연차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계획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12	10	9	8	7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3.85	3.39	2.99	2.63	2.32
인구1만명당 사망자수	1.19	1.05	0.92	0.81	0.72
도로10km당 삼아자수	0.9	0.79	0.7	0.62	0.54
14세이하 어린이 사망자수	0	0	0	0	0
65세이상 노인 사망자수	2.33	2.05	1.81	1.59	1.4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3.88	3.42	3.01	2.65	2.34

4) 교통약자 보호사업

(1)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도로 횡단중/보행중 일어나는사고임
- 초등학교 시설이 이면도로 생활도로에 위치하는바, 교차로 진출입 회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더욱 보강해야 함(어린이집 6개소, 초등학교 16개소)

(2) 고령자 교통안전사업

- 고령자일 경우 일반적인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에서 통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보행신호주기를 연장하거나 보행자 대피섬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위를 기울여야 함 (동두천노인복지관)

2.2.2 관련법규 검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표2-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교통수단 ② 여객시설 ③ 도로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1.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1.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1. 교통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底床)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3.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5.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계 속>

보행 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 15조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1.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 구역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16조 (특별교통수단)	1.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17조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1.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정보체제의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표2-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보행 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 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1.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를 말한다. ①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② 시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표2-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대수)</p>	<p>1.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6.30]</p>
<p>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p>	<p>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p>2.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②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p>3.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p> <p>4.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29></p>
<p>제7조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p>	<p>1.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은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p> <p>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용정보 등은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p>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표2-1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1.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 적으로 설치
제9조 (도로의 구분)	<사용 및 형태별 구분> 1.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 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5.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1.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2.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일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2호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1.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2. 일반도로에는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녹지·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제15조 (횡단보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주간선도로철로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 2.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것 3.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4.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6.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7.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 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p>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되,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표 계 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절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 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표2-15>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6절 교통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교통량 배분·도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로입체구역을 포함한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보행동선·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포함) 등의 계획을 수립.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모가 작거나 교통관련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2.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주차장 설치방식, 공동주차장 설치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지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 주차 서비스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차진출입이 간선도로변에서 직접 이루어져 간선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소형 필지에 주차출입구가 설치되어 보도가 단절됨으로써 보행활동이 침해되거나 보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중요 보행자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 3. 이면도로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량진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피하며, 간선도로변의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도록 함 4. 구역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개의 대형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역내 부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가구 또는 사업단위 간 동선연결 체계를 세움

<표 계 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제6절 교통처리</p>	<p>5. 상업지역에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차량 등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의 차량출입은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간선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보행단절이 최소화되도록 출입구의 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1개소만 허용하는 등 적절히 제한하거나 분산 - 상업지역내 이면도로에 몰(mall)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보차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라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의 폭, 보도 등을 충분히 계획 <p>6.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기존의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입체구역을 지정하고 도로와 건축물을 함께 계획</p> <p>7.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함 - 보행동선은 계획구역 및 구역 외 지역과 원활한 보행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함.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차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 -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선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안에 공공 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 주차장·광장·교통시설 등 보행자이용시설은 보행자가 걸어서 쉽게 이용하고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p>8.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이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상가·학교·공원·버스정류장 등과 같이 보행통행의 목적지 또는 발생지와 주거지 사이에는 자전거 및 보행연결체계를 갖추도록 함 - 보행자전용도로가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서 횡단할 경우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국지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국지도로에 차량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도의 단차를 줄이도록 하고 가급적 지반의 경사가 급하게 되는 것을 피함

<표 계 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6절 교통처리	9. 보행자데크·지하통로 및 경사로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입체적인 설계 예시를 하도록 함 10. 공동주차장은 소규모 필지가 밀집하여 개별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며, 주차장의 설치는 당해 시·군·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함 1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 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 단위계획으로 정함 12.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 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13. 공동주차장 또는 3-6-11.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됨.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4. 공동주차통로는 적극 권장하고 주차장출입구 위치선정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예를 들어, 대상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를 지정하고 공동건축 지정시 개발단위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15.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따르되, 상업지역에서 서비스차량이 편리하게 주·정차할 수 있도록 옥외주차장 확보비율을 정할 수 있음. 16. 지상의 녹지공간이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 확보비율을 정할 수 있음

라.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표2-16>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목적	1.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의 확보,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변 서비스 등 보도의 효율성 제고 2. 주민이 걸으면서 이웃과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환경 조성 3. 보행교통의 권장으로 차량교통수요의 흡수 도모
적용대상	시·군내 기존 도로의 정비시 또는 신설되는 도로의 계획시 적용
기본방향	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 자동차의 위험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장애요소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자를 고려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함 2) 식재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에 의한 소음과 대기오염 등을 감소시키도록 함 3) 보도공간은 보행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4) 보도 공간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도 폭을 확보하고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설치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기본방향	2. 주변여건을 고려한 보도의 계획 1) 도로의 기능, 주변의 토지이용, 지형여건, 보행목적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폭원과 구조 등에 대하여 계획 3. 구간, 노선, 공간별로 특성화된 보도의 조성 1) 도로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 공간 또는 가구 등의 단위로 보도의 형태와 주변의 토지이용을 연계시킴으로서 고유한 경관을 창출하고, 보행자에게 방향성 및 장소감을 부여 2) 보도를 구성한 포장·식재·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입체적인 설계를 통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와 고유성을 확보 4. 합리적인 교차부분의 구조설계 1) 보행자가 교차로나 횡단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하고 자연스러운 연속 동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함																										
보도계획 수립 기준	1. 보도의 공간배치 1) 보도는 일반도로의 양측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지로서 보행자 통로가 별도로 확보된 경우나 주변 여건상 양측 보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만 배치할 수 있음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지구내 국지도로는 보차공존도로의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할 수 있음 2. 유효보도 폭원의 산정 1) 보도의 폭원은 충분한 폭의 유효보도폭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효 보도폭은 보도내 시설물에 의한 보행 장애정도(일반적으로 0.5m)를 별도로 고려하여 산정																										
<보행에 장애를 주는 정도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보도내 시설물</th> <th style="width: 15%;">장애정도 (m)</th> <th style="width: 15%;">보도내 시설물</th> <th style="width: 15%;">장애정도 (m)</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가로등</td> <td>0.8~1.0</td> <td>휴지통</td> <td>0.9</td> <td rowspan="5">보도설계시는 연석이나 건물에 의하여 보행에 영향을 주는 폭 0.3~0.45m를 고려해 주어야 함</td> </tr> <tr> <td>교통신호대</td> <td>0.9~1.2</td> <td>지하철 환기구</td> <td>1.8</td> </tr> <tr> <td>교통안전 표지판</td> <td>0.6~0.8</td> <td>가로수</td> <td>0.9~1.2</td> </tr> <tr> <td>우체통</td> <td>1.0~1.1</td> <td>가로수 보호지주</td> <td>1.5</td> </tr> <tr> <td>공중전화 박스</td> <td>1.2</td> <td>버스표 및 신문판매대</td> <td>1.2~2.0</td> </tr> </tbody> </table>		보도내 시설물	장애정도 (m)	보도내 시설물	장애정도 (m)	비고	가로등	0.8~1.0	휴지통	0.9	보도설계시는 연석이나 건물에 의하여 보행에 영향을 주는 폭 0.3~0.45m를 고려해 주어야 함	교통신호대	0.9~1.2	지하철 환기구	1.8	교통안전 표지판	0.6~0.8	가로수	0.9~1.2	우체통	1.0~1.1	가로수 보호지주	1.5	공중전화 박스	1.2	버스표 및 신문판매대	1.2~2.0
보도내 시설물	장애정도 (m)	보도내 시설물	장애정도 (m)	비고																							
가로등	0.8~1.0	휴지통	0.9	보도설계시는 연석이나 건물에 의하여 보행에 영향을 주는 폭 0.3~0.45m를 고려해 주어야 함																							
교통신호대	0.9~1.2	지하철 환기구	1.8																								
교통안전 표지판	0.6~0.8	가로수	0.9~1.2																								
우체통	1.0~1.1	가로수 보호지주	1.5																								
공중전화 박스	1.2	버스표 및 신문판매대	1.2~2.0																								
자료 : 교통시설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85년																											

<표 계 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보도계획 수립 기준	2)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정도를 별도 가산한 폭으로 함) 3. 보도 서비스 수준에 입각한 보도설계 기준 1) 보도폭원의 결정은 단위시간당 단위보도폭을 통과하는 보행자수, 보행속도, 보행자 1인당 보도 점유면적 등과 같은 예상되는 보행류의 특성을 보도 서비스 수준으로 설정하여 보도폭원의 질적 수준을 우선 결정 2) 보도 서비스 수준을 바탕으로 보행량-유효보도폭-서비스 수준간의 도표를 이용하여 유효 보도폭을 산정 - 기존 도로의 경우 : 보행량과 유효보도폭을 조사·산정하고, 보도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기존 도로의 정비시 적용 - 보도를 신설할 경우 : 일정한 서비스 수준(바람직한 보도 서비스 수준은 B 또는 C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최대 보행량에 따라 유효 보도폭을 산정																																									
	<보도의 서비스 수준> <table border="1" data-bbox="480 1077 1396 1688"> <thead> <tr> <th>서비스 수준</th> <th>보행 점유 면적 (㎡/인)</th> <th>보행자 평균 이동률 (인/분/m)</th> <th>평균 보행 속도 (m/분)</th> <th>보행자수/보도용량 (V/C)</th> <th>보행상태</th> </tr> </thead> <tbody> <tr> <td>A</td> <td>2.7이상</td> <td>20</td> <td>76이상</td> <td>< 0.24</td> <td>·보행속도의 선택이 자유로움 ·타보행자의 추월이 자유로움</td> </tr> <tr> <td>B</td> <td>2.2~2.7</td> <td>20~33</td> <td>73~76</td> <td>0.24~0.40</td> <td>·정상적인 보행속도 ·마주 오는 보행자와 약간의 접촉</td> </tr> <tr> <td>C</td> <td>1.5~2.2</td> <td>33~46</td> <td>68~73</td> <td>0.40~0.56</td> <td>·보행속도의 선택과 추월에 약간 제한</td> </tr> <tr> <td>D</td> <td>1.0~1.5</td> <td>46~59</td> <td>46~59</td> <td>0.56~0.72</td> <td>·보행속도와 보행방향을 바꿈 ·정상적 보행상태의 제한</td> </tr> <tr> <td>E</td> <td>0.6~1.0</td> <td>59~82</td> <td>59~82</td> <td>0.72~1.00</td> <td>·공공장소에서의 현상 ·타보행자 통과 및 역행하기 어려움</td> </tr> <tr> <td>F</td> <td>0.6이하</td> <td>82이상</td> <td>82이상</td> <td>1.00</td> <td>·발을 끌고 가는 상태</td> </tr> </tbody> </table> 자료 : 교통시설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85년. 4. 보도의 조성 1) 보도는 경관식재를 겸한 보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도의 폭이 넓고 주변 여건상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를 활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계획할 수 있음 2) 전망이 좋은 도로나 넓은 도로에는 보도를 넓게 확보하여 식재와 가로시설물(단주, 벤치, 식수대 등), 바닥포장 등이 적정히 조화되도록하여 가로의 미관을 조성하고 가로공원과 같이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서비스 수준	보행 점유 면적 (㎡/인)	보행자 평균 이동률 (인/분/m)	평균 보행 속도 (m/분)	보행자수/보도용량 (V/C)	보행상태	A	2.7이상	20	76이상	< 0.24	·보행속도의 선택이 자유로움 ·타보행자의 추월이 자유로움	B	2.2~2.7	20~33	73~76	0.24~0.40	·정상적인 보행속도 ·마주 오는 보행자와 약간의 접촉	C	1.5~2.2	33~46	68~73	0.40~0.56	·보행속도의 선택과 추월에 약간 제한	D	1.0~1.5	46~59	46~59	0.56~0.72	·보행속도와 보행방향을 바꿈 ·정상적 보행상태의 제한	E	0.6~1.0	59~82	59~82	0.72~1.00	·공공장소에서의 현상 ·타보행자 통과 및 역행하기 어려움	F	0.6이하	82이상	82이상	1.00
서비스 수준	보행 점유 면적 (㎡/인)	보행자 평균 이동률 (인/분/m)	평균 보행 속도 (m/분)	보행자수/보도용량 (V/C)	보행상태																																					
A	2.7이상	20	76이상	< 0.24	·보행속도의 선택이 자유로움 ·타보행자의 추월이 자유로움																																					
B	2.2~2.7	20~33	73~76	0.24~0.40	·정상적인 보행속도 ·마주 오는 보행자와 약간의 접촉																																					
C	1.5~2.2	33~46	68~73	0.40~0.56	·보행속도의 선택과 추월에 약간 제한																																					
D	1.0~1.5	46~59	46~59	0.56~0.72	·보행속도와 보행방향을 바꿈 ·정상적 보행상태의 제한																																					
E	0.6~1.0	59~82	59~82	0.72~1.00	·공공장소에서의 현상 ·타보행자 통과 및 역행하기 어려움																																					
F	0.6이하	82이상	82이상	1.00	·발을 끌고 가는 상태																																					

<표 계 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보도계획 수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도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여 어린이, 고령자,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4)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호시설, 식수대 등을 설치 5) 자전거의 이동, 어린이, 고령자, 신체장애자, 유모차 등의 횡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차도간의 고저차 및 경사도를 가능한 한 적게 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함 6)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구내 주차장의 출입구나 상풍의 하역 등으로 인한 단절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계획 <p>5. 버스정차대 주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버스정차대 주변은 정차공간과 보도의 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바닥포장, 시설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승차대기공간과 보도를 구별시켜 조성함으로써 식별성 및 쾌적성을 높이도록 함 2) 버스정차대 주변의 시설물(교통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부스, 벤치, 보도등) 등은 버스 승하차 및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 <p>6. 횡단시설 주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횡단보도 주변의 보도조성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 2)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구간에 정지선, 안전지대, 점멸신호기 및 보행자신호등, 아동보호등, 횡단보도 예고표지판 등의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 3) 장애자의 횡단보행이 용이하도록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단차를 없애고, 벨신호기 등을 설치 4) 가로수, 가로시설물 등 주변시설로 인하여 횡단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함 5)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의 횡단 및 교차지점에는 보행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입체적인 보차분리(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지하계단식 보도, 육교 등)가 되도록 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 6) 입체적인 보차분리시설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와의 차이점, 도로의 여건상 필요한 지점 및 보행자 횡단이 위험한 지점 등에 설치 7) 육교나 지하도의 승강부 전면은 보행동선에 교차되기 쉬운 장소이므로 가로시설물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은 가능한 수목, 잔디 등 지피식물, 화초류를 식재하여 미관을 향상 8) 필요에 따라서 육교나 지하도의 승강부분 아래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전화부스, 우체통, 판매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9) 지하도의 출입구 설치로 보도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하도 출입구를 연도건물(도로에 접한 건물)의 지하출입구에 연결 또는 연도에 부지를 확보하여 보도밖에 설치하거나 건물쪽으로 보도를 확장 10) 교량은 물론 교량램프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보행시설을 설치하여 보도의 연속성을 확보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보도의 설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의 포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료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료일 것 -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것 - 보행자 하중 뿐만 아니라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 - 재료비, 시공비, 유지비 및 교체비용이 경제적인 것 - 질감이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일 것 - 가능하면 현장의 특수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향토적인 재료일 것 - 점토나 석재 등의 자연스러운 재료들은 정상적인 마모나 훼손시에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연재료를 사용 2)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시 돌출물에 걸리거나 패어진 흠에 의하여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행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초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할 것 - 포장은 배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스스로 정화되는 구조를 취하여 보행시 쾌적함을 유지할 것 - 횡단보도에 접하여 있는 보도부는 경계석을 낮추고 접자블록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여 장애자의 횡단보행이 용이하도록 할 것 - 공간의 영역구분, 방향, 주의 등의 식별성이 요구되는 지점은 장식이 과다하지 않은 단순하고 명료한 패턴의 바닥포장이 되도록 할 것 - 보행자의 특성과 보행자 이동의 유형에 따라 질감을 다르게 함(예를 들어 포장재료의 거칠고 고운 질감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유도하고 조절) - 공간 구간별 성격과 기능에 따라 또는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에 따라 포장의 질감, 주요 색채 등의 패턴이 특화되도록 할 것(예를 들어 주거지 인접 보도는 인접 주거단지의 주조색을 고려하여 포장의 색상으로 선정하도록 할 것) - 장소에 따라 특별한 지역, 통로, 결절점, 출입구 등에는 포장패턴의 변화, 특수 포장재료의 도입, 도시나 지역의 로고나 심볼, 특별한 문양의 새김 등으로 장소감과 방향성을 부여 2. 보도의 식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종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에는 풍부한 녹음을 얻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많은 햇볕을 얻을 수 있는 은행나무 등 낙엽활엽수의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양 및 대기환경의 불량, 보행자의 하중, 지상 및 지하(지하 매설물 등)의 각종 장애, 보도의 협소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 보행자 및 차량사고에 의한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른 수종을 선정할 수 있음 -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전정이나 병충해에 잘 견디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 - 토양·기후 등 생태적 조건에 적합한 수종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지방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향토수종을 선정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보도의 설치기준</p>	<p>2). 식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5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3m 이상인 도로에는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보도가 1.5m 이상이 되는 도로 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식재할 수 있음 - 지하에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에는 1.2m 이상의 토심과 주당 9m² 이상의 면적을 확보 <p>3. 가로시설물</p> <p>1) 재료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구조와 재료는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에 용이하여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함 - 합성재료보다는 가능한 한 나무, 대나무, 돌 등과 같은 자연재료를 선정하여 활용 - 해안지역에는 수분, 염분, 바람 등에 강한 재료를 선정하고, 특수한 지역에는 지형여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 <p>2)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시설, 안내시설 등의 가로시설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적재적소에 설치하되, 이용형태와의 상충을 피하고 보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차로, 곡선부, 로터리, 횡단보도 등 도로의 구조가 변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에 안내시설 및 조명시설을 집중 설치할 것 - 교통표지판, 안내판, 가로등, 신호등 등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 통합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되, 수직적 요소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하여 정돈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의 가로시설물은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장소를 선택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 가로광장 및 가로공원의 진입부, 보도 모서리의 여유공간, 버스 정차대등의 위치에는 조명등, 단주, 수목, 벤치 등을 하나의 군이 되도록 배치하여 특별한 공간을 형성토록 할 것 - 가능한 한 가로시설물은 복수의 기능을 가도록 설계하여 그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우체통, 휴지통, 전화부스 등의 편익시설 및 수목 등은 집단화시켜 배치하고, 이러한 시설물들은 통합된 계획에 따라 일관성있는 형태로 설계 - 가로시설물은 개별요소가 아닌 가로시설물 체계의 구성요소로 보고 그룹을 지어 공통된 고정장치와 지지기 등을 이용하여 통합 설계 - 수목보호호, 덮개, 상하수도, 전기통신 맨홀 등을 포함한 세부시설은 가능한 한 조형성을 갖춘 자체 도시의 독자적 형상의 제품을 개발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지역 이미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마.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

<표2-17>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목적	1.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 2.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적용범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사업지구 2.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지역 3. 상업·업무지역 등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그 밖에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계획의 기본방향	1. 공공시설, 보행집결지, 오픈스페이스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2.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3. 노선별, 구간별 특성화
공간조성 기준	1. 일반원칙 1)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여건에 적합한 유형으로 특화하여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 구분 2) 필요시 보행자 전용도로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보행자전용도로의 내부구조, 폭원 구배 등은 보행에 의존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척도를 고려하고, 양호한 시계의 확보, 적정 보행밀도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안전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보행자전용도로 노선 주변의 개발상태 및 잠재력(위치, 주변 토지이용, 보행목적, 밀도 등)에 따라 이용형태, 공간의 형태(폭과 선형)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노선별로 특성있는 보행공간이 되도록 할 것 5) 보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하여 있는 소규모 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건축물의 전면간격 등 주변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공간이 되도록 할 것 6) 보행자전용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 7) 일반도로의 평면교차하는 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행밀도 및 속도에 따라 적절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함 8) 보행자전용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결절점 주변에는 소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야 함 9) 신체장애자, 고령자 등의 이용에 불편에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10) 공중변소, 공중전화, 우체통, 벤치, 차양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과 녹지 등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교차점이나 보행결집지, 그 밖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1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공간조성 기준	<p>12) 긴급 차량이나 기반시설의 검사,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사람이 용이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식재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폭원(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p> <p>2.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p> <p>1)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 -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몰(mall)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보행인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상행위를 유도하는 보행자전용도로 <p>2) 폭원 : 주변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지만 최소한 6m이상(쇼핑몰은 10~20m)</p> <p>3) 선형 :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성(쇼핑몰과 같이 활발한 상행위가 유도되는 공간은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겸용하여 구성)</p> <p>4) 공간구성 : 통근·통학·구매 등의 목적통행 위주의 동적 공간과 집회·만남·휴식 등을 위한 광장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성</p> <p>5) 조성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활동이 많은 공간이므로 내부광장, 가로시설물 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와 연결하여 있을 때에는 소규모 광장 등을 두어 보행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 보행자데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아래층의 천장고를 최소한 4.5m를 확보하고 지상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체계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에스컬레이터등의 수직동선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 <p>3.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p> <p>1)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보행자전용도로(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동선) - 지선보행자전용도로(간선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동선) <p>2) 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보행자전용도로 : 6m이상(주변지형여건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지선보행자전용도로 : 3~4m(주변지형여건 등에 따라 1.5m이상도 가능) - 선형 :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공간적 변화의 창출을 위하여 지형조건에 따라 곡선형 등으로 설치 가능 - 공간구성 : 통근·통학·구매 등의 주요한 목적동선을 수용하는 공간과 산책 등 회유동선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구성 <p>3) 조성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주구중심내 시민회관, 어린이공원 등이 접하는 입구부분에 소광장을 설치하여 휴식·정보전달, 유아들의 놀이활동, 소집회 등 개개인의 일상적 활동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목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계 속>

보행 환경 관련 조항	주 요 내 용
공간조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의 상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간의 대화·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특히 보행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진입부에 단주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할 것 <p>4)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 : 폭원은 가급적 3m 이상으로 하되,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체 폭원을 6m 이상으로 하고 개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넓게 할 것 - 선형 : 선형은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간구성 : 녹지대, 자연녹지, 고수부지, 제방, 공원 등의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공간을 구성 <p>5) 조성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폭원의 녹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형의 중앙분리대나 식수대 등을 이용하여 변화있는 공간으로 조성 - 부정형의 보행로로 인하여 생기는 소공간에는 벤치, 파고라 등이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등 다양한 활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도록 하여 고령자나 신체장애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시설기준	<p>1. 포장</p> <p>1)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장소의 성격에 적합한 포장 - 지역에 따라 혹은 유적지, 해안가 등 공간성격과 목적동선, 회유동선 등 동선의 성격에 따라 포장재료, 색채, 패턴 등을 달리할 수 있음 - 전 구역을 포장할 경우에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포장마감을 조합하여 재료나 색체에 변화를 갖도록 할 것 - 특별한 지역, 통로, 중요한 결절점, 교차로 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는 포장패턴의 변화, 포장재료, 색상, 도시의 로고나 특별한 문양의 새김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장소감을 부여 - 보행시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포장 - 보행시 돌출부에 걸리거나 패어진 흙에 의하여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 - 배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쾌적감을 유지 - 차도 등과의 교차지점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패턴과 유사하게 바닥포장을 하고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펌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것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시설기준	<p>2) 재료의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할 것 -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보수가 용이할 것 - 질감이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일 것 - 가능하면 현장의 특수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향토적인 재료일 것 - 포장색채, 평면형태, 평면 또는 경사면에서의 적합성, 내열성, 투수성 등을 고려할 것 <p>2. 식재의 일반원칙</p> <p>1) 식재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물, 조각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식재하고 노출된 혐오시설 등은 생활타리 등을 이용하여 차폐식재를 하도록 할 것 - 구획도로에 면안 부분, 시선 유도지점, 차폐시설, 법면 등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식재기법을 활용 - 다른 보행자전용도로나 일반차도 등과의 교차지점에서의 식재는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 <p>2) 수종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전용도로내의 장소별 특성에 부합되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화목의 개화기, 향기, 신록, 열매, 색깔 등의 미적요소를 고려한 수종을 혼합배식하여 계절적인 감각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 이식의 용이성, 기온, 토성, 수분, 병충해, 공해 등의 환경에 대한 적응성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 <p>3)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관폭이 넓은 낙엽활엽수를 주종으로 2열 병렬식재를 하여 연속성 및 쾌적성을 제고 - 광장 등에는 고립식재, 휴게공간 등에는 경관·녹음식재를 하고, 진입부 또는 교차로 부분에는 특징적인 수종을 선정하여 요점식재를 하는 등 장소에 따라 적절한 수종선택 및 식재기법을 활용하여 식재 - 공간의 성격이 변화되는 경계부의 적정 위치에 밝고 화려한 화초류 위주의 식재대를 설치하여 식재 <p>4)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화목활엽류의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주변에는 저화목, 잔디 등을 식재하여 친밀감 및 계절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 공원과 만나는 입구부 식재는 녹음기능을 중시하여 공원과 보행공간이 일체화되도록 하여야 함 - 고층아파트 주변의 보행공간의 식재는 아파트에 의하여 그늘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밝은 색채의 화목류와 관상기능의 수종을 식재 <p>5)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종은 관상가치가 큰 관목류를 주로하여 식재하고 화목류, 상록수, 활엽수 등을 선정하여 적정 배치·식재

<표 계 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녹지, 근린공원 등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녹음식재, 경관식재, 조화식재 등으로 식재 - 교목과 관목에 의한 식재대를 설치하고 주택지와 면한 곳의 경우에는 상록 교목이나 관목으로 차폐식재를 하며 소광장 및 방향전환지점, 결절점에는 고립식재를 할 것 <p>3. 가로시설물</p> <p>1) 일반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시설, 안내시설 등의 가로시설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적재적소에 설치 하되, 이용형태와의 상충을 피하고 보행자의 통행과 시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의 가로시설물은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장소를 선택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의 구조가 변하는 곳에는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안내시설 및 조명시설을 집중 설치 - 가로광장 및 가로공원의 진입부, 도로모퉁이의 여유공간, 버스정차대 등의 위치에는 조명등, 단주, 수목, 벤치 등을 하나의 군이 되도록 배치하여 특별한 공간이 형성되도록 할 것 - 안내판과 가로등의 통합지주, 단주와 벤치 겸용시설 등과 같이 가능한 한 가로시설물은 복수의 기능을 갖도록 통합 설계하여 그 수량을 최소화시키도록 함 - 안내시설·조명시설·파고라·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우체통·휴지통·공중전화 등의 편익시설 및 수목 등은 집단화시켜 배치하고, 이러한 시설물들은 통합된 계획에 따라 일관성있는 형태로 설계 - 수목보호울 덮개, 상하수도, 전기통신맨홀 등을 포함한 세부시설은 가능한 한 조형성을 갖춘 자제와 시·군의 독자적 형상의 제품을 개발하여 미관 및 지역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p>2) 재료의 선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이 있는 재료일 것 - 합성재료 보다는 가능한 한 나무, 대나무 등과 같은 자연재료를 활용 - 특수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할 것 (해안지역에는 수분, 염분, 바람 등에 강한 재료)

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표2-18>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16조 (보도)	<p>1.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p>

<표 계속>

보행 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3)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4)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제16조 (보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도의 최소 폭(m)</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방지역의 도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도시지역의 도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간선도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집산도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2.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지도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r> </tbody> </table> <p>3. 보도의 폭 결정시 구비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을 가질 것 2) 특히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도시시설이므로 필요한 폭, 즉 노상시설대의 폭, 가로미관, 도로 주변환경과의 조화, 도로 주변 서비스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가질 것 3)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1.5m를 최소 폭으로 할 것 4) 특히 교차로 간격이 조밀한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 교차로에서 시거를 증대시켜 교통의 안전성에 기여하게 하는 등 부차적인 효과가 있음 <p>4.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p> <p>5.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폭에 다음 각 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이나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 2) 노상시설이 가로수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 	구분		보도의 최소 폭(m)	지방지역의 도로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3.00	집산도로	2.25	국지도로	1.50
구분		보도의 최소 폭(m)												
지방지역의 도로		1.50												
도시지역의 도로	간선도로	3.00												
	집산도로	2.25												
	국지도로	1.50												

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표2-19>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법 제2조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보도 ”라 함은 연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 장애자들의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함 2. “ 횡단보도 ”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함 3. “ 안전표지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함 4. “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함
<p>법 제8조 (보행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음 3.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함
<p>법 제11조 (어린이등의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함
<p>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개정 08.2.29,10.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야 함 <개정 08.2.29> 3.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함 <신설 97.8.30, 본조신설 97.1.5>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법 제12조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개정 2010.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3.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함 <개정 2010.7.23>
<p>법 제 28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음 2.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음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함
<p>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개정 2007.4.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
<p>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할것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 12조 2의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표2-2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해당)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함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함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함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보육시설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3.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제4조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표 계속>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4조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2.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交通安全시설의 종류 및 수량 -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交通安全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 3.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제6조 (交通安全시설의 설치)	1.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함 3.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 2의 안전표지 -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II.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 3의 안전표지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1.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2.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3.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

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표2-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법 제2조 (정의)</p>	<p>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p> <p>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p>
<p>시행령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정의)</p>	<p>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함 [전문개정 2007.2.12]</p>
<p>시행령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p>	<p>1.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개정 1999.6.8, 2007.2.12></p> <p>1) 삭제 <2006.1.19></p> <p>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p> <p>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p>
<p>시행령 제7조의 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p>	<p>1.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함 <개정 2007.2.12></p> <p>1) 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p> <p>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p> <p>3) 삭제 <2006.1.19></p> <p>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p> <p>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p> <p>6)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p> <p>7)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본조신설 2004.6.29]</p>

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표2-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보행환경 관련 조항	주요 내용
<p>법 제1조 (목적)</p>	<p>1.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p>
<p>법 제4조 (차별행위)</p>	<p>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함)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p>
<p>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p>	<p>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함)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개정 2010.5.11> 2.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3.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4.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5.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함</p>

2.3 교통약자 현황

2.3.1 교통약자 현황

가. 교통약자 범위

1) 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10. 6」의 제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2-23> 교통약자의 정의

조항	법 률 내 용
제2조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구분

- 장애인 : 동두천시 등록장애인 인구(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제외)
- 고령자 : 동두천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 어린이 : 동두천시 인구 중 5~9세 인구
- 임산부 : 동두천시 인구 중 출생아 인구
- 영·유아를 동반한 자 : 동두천시 인구 중 0~4세 인구

나. 전국 교통약자 인구대비 비율

- 통계청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12,290,943인으로 전국 인구 50,515,666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인구가 1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2-24> 전국 교통약자 비율(2010년)

(단위 : 인, %)

구분	합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자
교통약자인구 (총 인구)	12,290,943 (50,515,666)	1,556,896	5,506,352	470,171	2,457,829	2,299,695
총 인구 대비	24.3	3.1	10.9	0.9	4.9	4.6
교통약자 비율	100	12.7	44.8	3.8	20.0	18.7

자료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3, 국토해양부

다. 동두천시 인접시군 교통약자 현황

- 동두천시의 2010년 인구대비 교통약자수를 살펴보면, 경기도(24.2%), 양주시(27.9%), 포천시(28.5%)에 비해 높은 비율인 30.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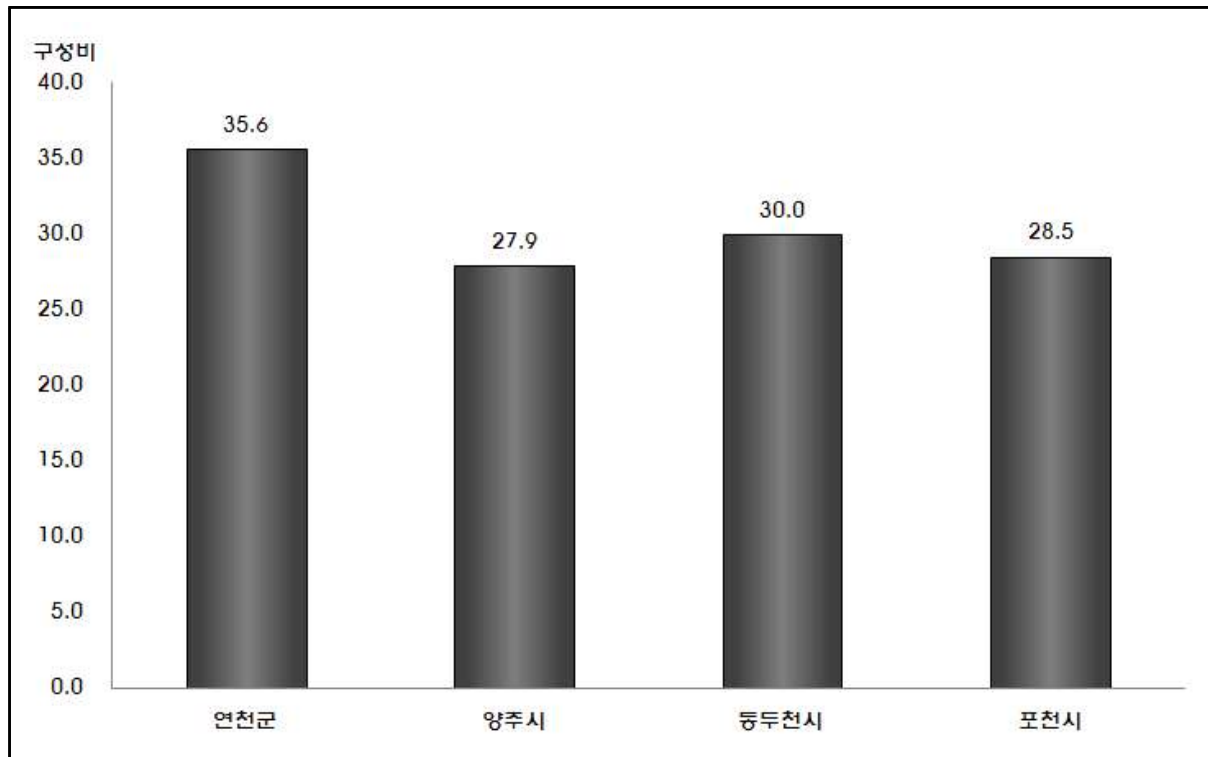
<표2-25> 동두천시 인접시 교통약자수(2010년)

(단위 : 인, %)

구 분	인구	교 통 약 자						구 성 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계	
경 기 도	11,786,622	500,704	998,567	121,751	635,460	599,224	2,855,706	24.2
연 천 군	45,177	3,417	8,806	367	1,865	1,636	16,091	35.6
양 주 시	196,706	9,903	19,963	1,986	11,817	11,180	54,849	27.9
동 두 천 시	95,653	5,528(3,441)	12,415	990	4,944	4,786	28,663	30.0
포 천 시	158,658	9,643	20,216	1,265	7,550	6,593	45,267	28.5
합 계	496,194	28,491	61,400	4,608	26,176	24,195	144,870	29.2

자료 : 경기도 통계연보 및 각시별 통계연보 2010년 말 기준

주 : ()의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그림2-10> 동두천시 인접시 교통약자 비율(2010년)

2.3.2 동두천시 교통약자 현황

가. 장애인 현황

1) 장애인 인구 추이

- 동두천시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인구증가율이(2.0%)에 비해 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인구의 구성비 또한 1.4%로 증가하였다.

<표2-26> 동두천시 장애인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전체인구	88,780	90,835	93,211	95,653	96,253	2.0
장애인	2,991	3,127	3,370	3,441	3,428	3.5
인구대비 구성비	3.4	3.4	3.6	3.6	3.6	1.4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주 :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2) 장애등급별 장애인 현황

- 동두천시 2010년 장애등급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1급 8.8%, 2급 16.6% 3급 20.7%, 4급 13.5%, 5급 17.4%, 6급 23.0%를 차지하고 있다.

<표2-27> 장애등급 현황

(단위 : 인,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2007년	315	573	606	399	470	628	2,991
2008년	322	578	640	407	505	675	3,127
2009년	335	607	669	428	572	759	3,370
2010년	307	580	696	461	609	788	3,441
2011년	301	570	709	463	595	790	3,428
구성비	1,580	2,908	3,320	2,158	2,751	3,640	16,357
증가율	8.8	16.6	20.7	13.5	17.4	23.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주 :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제2장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3) 장애인 유형별 인구 현황

- 동두천시 장애인 유형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991명, 2011년 3,428명으로 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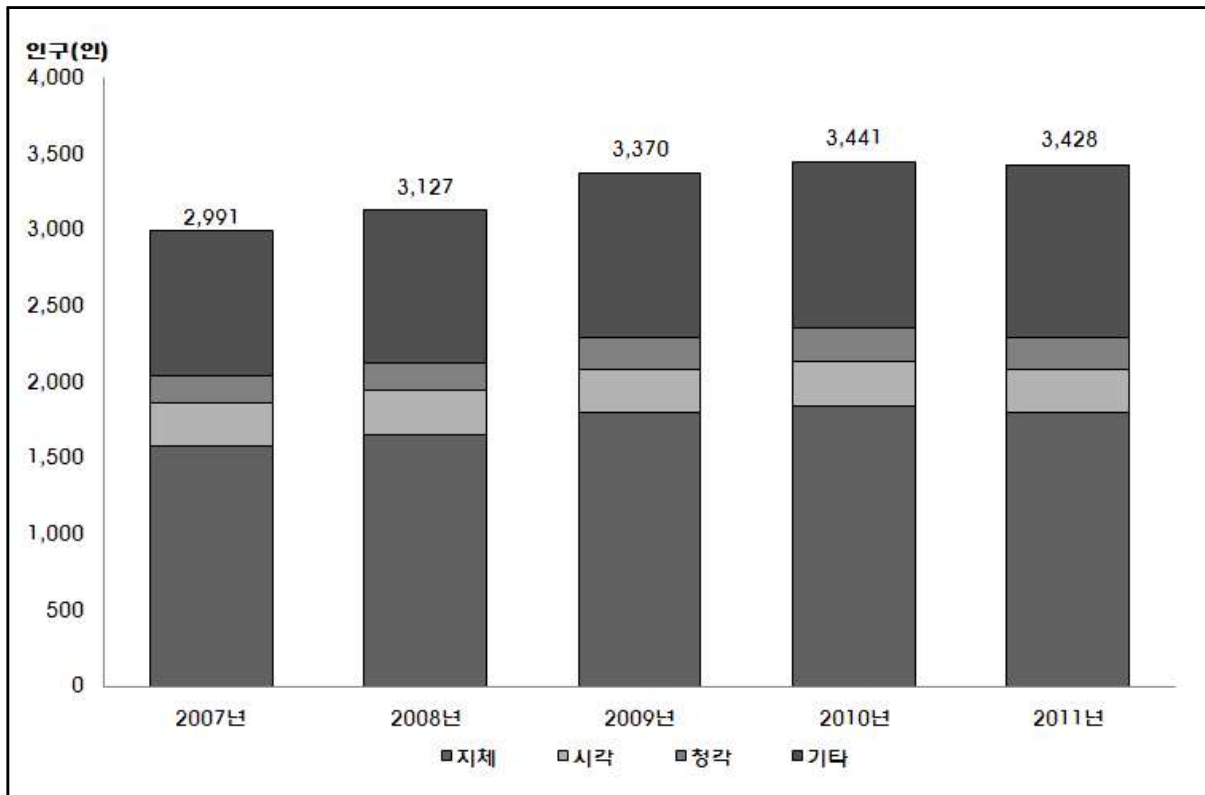
<표2-28>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단위: 인,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기타
2007년	2,991	1,581	281	182	947
2008년	3,127	1,658	286	183	1,000
2009년	3,370	1,805	278	206	1,081
2010년	3,441	1,848	285	218	1,090
2011년	3,428	1,802	287	208	1,131
구성비	100.0	52.6	8.4	6.0	33.0
증가율	3.5	3.3	0.5	3.4	4.5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주 :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그림2-11>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2011년)

나. 고령자 현황

1) 고령자 추이

- 동두천시 고령자 인구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전체 인구증가율(2.0%) 비해 높은 증가율(5.9%)을 보이고 있다.

<표2-29> 동두천시 고령자 추이

(단위: 인,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전체인구	88,780	90,835	93,211	95,653	96,253	2.0
고령자	10,352	10,971	11,605	12,415	12,996	5.9
인구대비 구성비	11.7	12.1	12.5	13.0	13.5	3.6

자료 : 통계청 및 동두천시 각 연도별 통계연보

2) 지역별 고령자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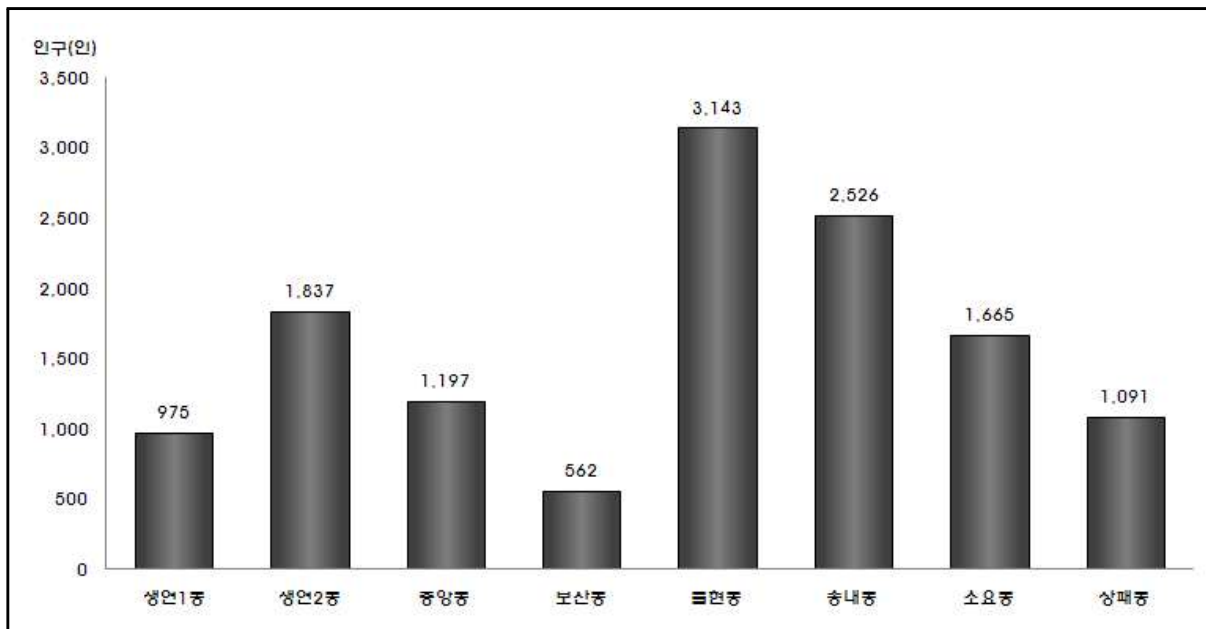
- 동두천시 지역별 고령자 인구를 살펴보면, 불현동이 2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내동 19.4%, 생연2동 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2-30> 지역별 고령자 인구(2011년)

(단위: 인, %)

구 분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	합계
고령자	975	1,837	1,197	562	3,143	2,526	1,665	1,091	12,996
구성비	7.5	14.1	9.2	4.3	24.2	19.4	12.8	8.5	100.0

자료 : 통계청



<그림2-12> 지역별 고령자 인구 현황(2011년)

다. 임산부 현황

1) 임산부 인구 추이

○ 동두천시 임산부 인구를 살펴보면 다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1> 동두천시 임산부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전체인구	88,780	90,835	93,211	95,653	96,253	2.0
임 산 부	947	881	871	990	946	-
인구대비 구 성 비	1.1	1.0	0.9	1.0	1.0	-2.4

자료 : 통계청 및 동두천시 각 연도별 통계연보

2) 지역별 임산부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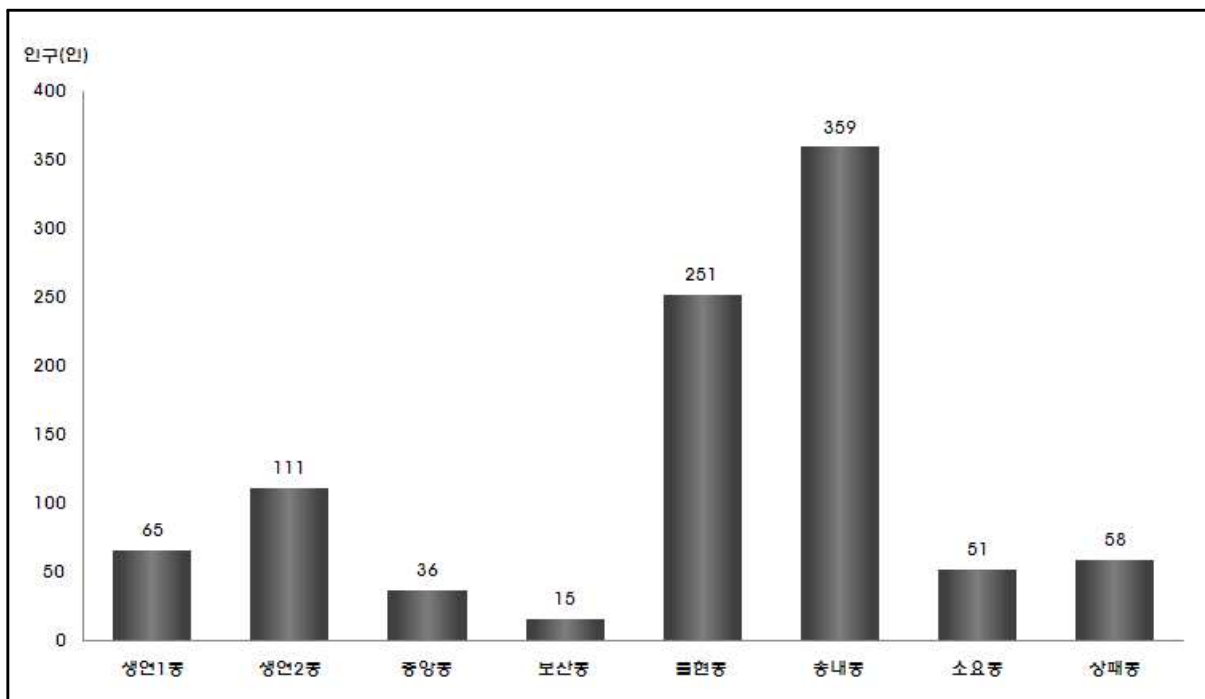
○ 동두천시 지역별 임산부 인구를 살펴보면, 송내동이 3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현동 26.5%, 생연2동 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2-32> 지역별 임산부 인구(2011년)

(단위: 인, %)

구 분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	합계
임 산 부	65	111	36	15	251	359	51	58	946
구 성 비	6.9	11.7	3.8	1.6	26.5	37.9	5.4	6.2	100.0

자료 : 통계청



<그림2-13> 지역별 임산부 인구 현황(2011년)

라. 어린이 현황

1) 어린이 인구 추이

- 동두천시 5~9세 어린이 인구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전체 인구증가율(2.0%)에 낮은 증가율(-4.3%)을 보이고 있다.

<표2-33> 동두천시 어린이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전체인구	88,780	90,835	93,211	95,653	96,253	2.0
어 린 이	5,689	5,590	5,363	4,944	4,778	-4.3
인구대비 구 성 비	6.4	6.2	5.8	5.2	5.0	-6.0

자료 : 통계청 및 동두천시 각 연도별 통계연보

2) 지역별 어린이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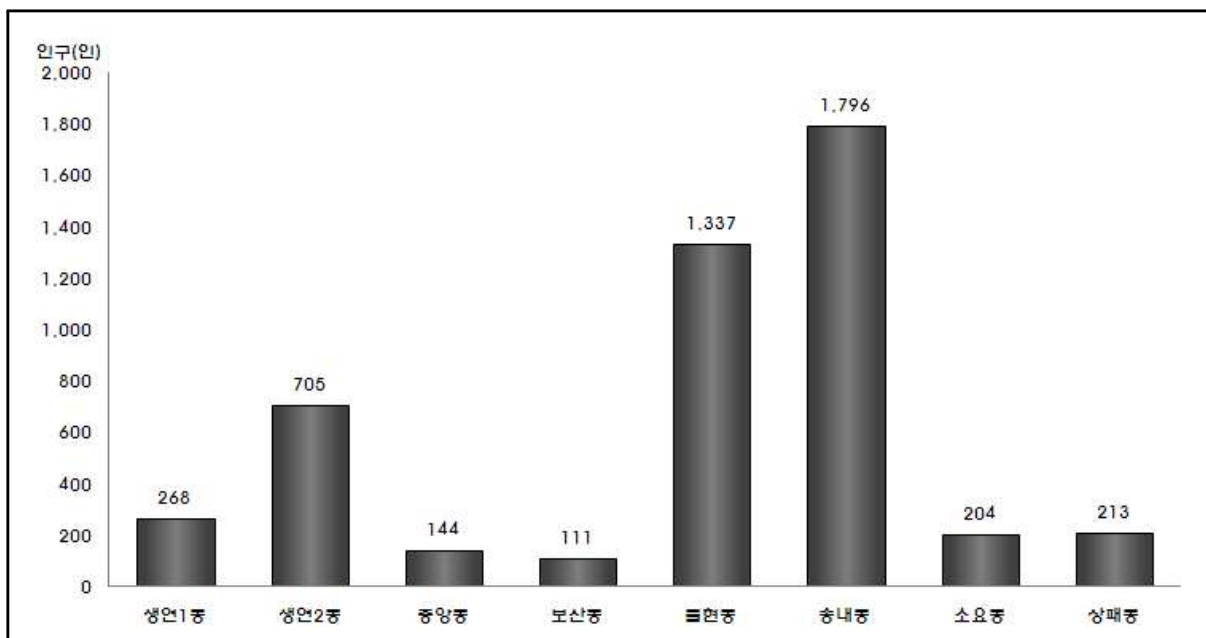
- 동두천시 지역별 어린이 인구를 살펴보면, 송내동이 3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현동 28.0%, 생연2동 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2-34> 지역별 어린이 인구(2011년)

(단위: 인, %)

구 분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	합계
어 린 이	268	705	144	111	1,337	1,796	204	213	4,778
구 성 비	5.6	14.8	3.0	2.3	28.0	37.6	4.3	4.4	100.0

자료 : 통계청



<그림2-14> 지역별 어린이 인구 현황(2011년)

마. 영·유아를 동반한자 현황

1)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 추이

- 4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를 살펴보면, 2007년 4,654인에서 2011년 4,764인으로 0.6%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2-35> 동두천시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 추이

(단위 : 인,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전 체 인 구	88,780	90,835	93,211	95,653	96,253	2.0
영·유아를 동반한자	4,654	4,539	4,639	4,786	4,764	0.6
인구 대 비 구 성 비	5.2	5.0	5.0	5.0	4.9	-1.5

자료 : 통계청 및 동두천시 각 연도별 통계연보

2) 지역별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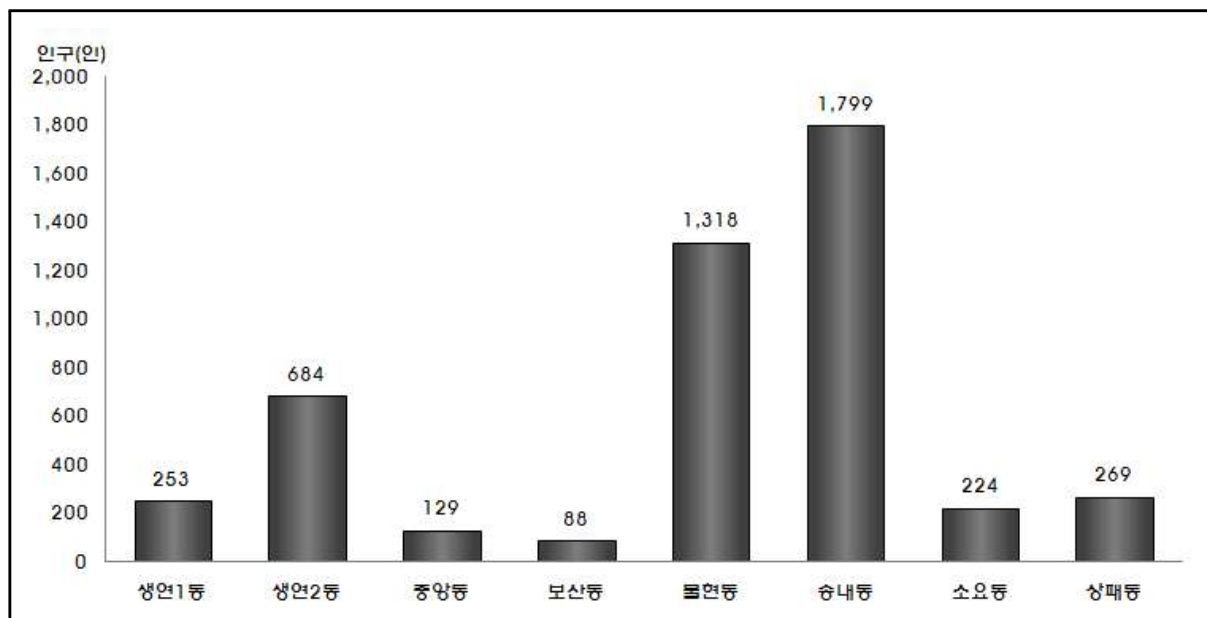
- 동두천시 지역별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를 살펴보면, 송내동이 3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현동 27.7%, 생연2동 14.4% 순으로 나타났다.

<표2-36> 지역별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2011년)

(단위 : 인, %)

구 분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	합계
영·유아를 동반한자	253	684	129	88	1,318	1,799	224	269	4,764
구 성 비	5.3	14.4	2.7	1.8	27.7	37.8	4.7	5.6	100.0

자료 : 통계청



<그림2-15> 지역별 영·유아를 동반한자 인구(2011년)

바. 동두천시 연도별 교통약자 추이

- 동두천시 교통약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24,633인에서 2011년 26,912인으로서 2.2%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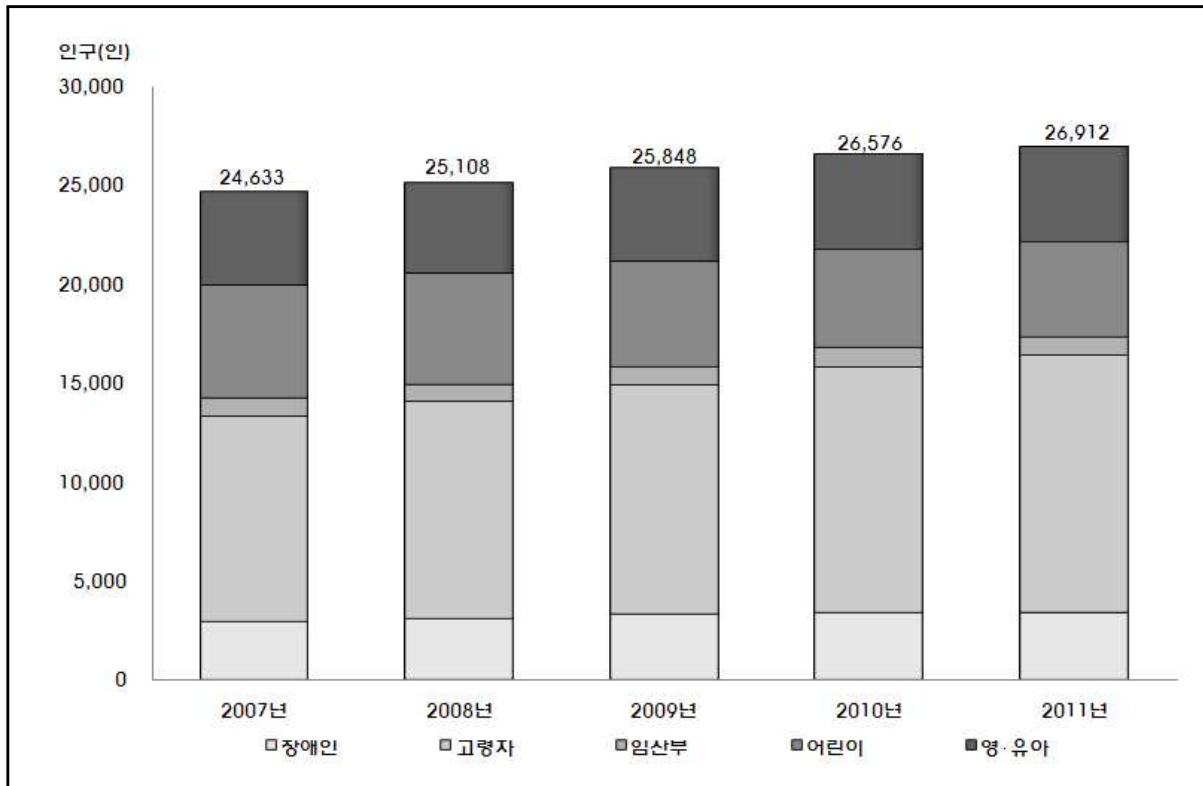
<표2-37> 교통약자 연도별 추이

(단위 : 인,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장 애 인	2,991	3,127	3,370	3,441	3,428	3.5
고 령 자	10,352	10,971	11,605	12,415	12,996	5.9
임 산 부	947	881	871	990	946	-
어 린 이	5,689	5,590	5,363	4,944	4,778	-4.3
영·유아	4,654	4,539	4,639	4,786	4,764	0.6
합 계	24,633	25,108	25,848	26,576	26,912	2.2

자료 : 통계청,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및 동두천시 각 연도별 통계연보

주 :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그림2-16> 교통약자 연도별 인구 추이

2.4 교통약자 예측

2.4.1 교통약자 유형별 인구수 예측

가. 동두천시 교통약자인구 예측방법

- 장래 교통약자 인구를 예측하기 위하여 「제2차 국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2012, 국토해양부」에서 제시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통계청」의 경기도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과거 10년간(2001년~2010년) 교통약자추이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여 과거 교통약자의 특성을 시계열적 및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1차직선식(최소자승법), 지수식(복합모형), 로지스틱 곡선식 등의 모형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등차급수법 :	$P_n = Y_0 + ax$	여기서,	P_n :	목표연도 인구
등비급수법 :	$P_n = Y_0 \times (1+r)^x$		Y_0 :	추정기준년의 인구
1차 직선식(최소자승법) :	$P_n = a + bn$		x :	현재로부터 경과년수
지수식(복합모형) :	$P_n = ab^n$		n :	년도
Logistic 곡선식 :	$P_n = K / (1 + be^{(an)})$		a, b :	매개변수(계수)
			K :	인구성장한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통계청」의 경기도 증가율을 적용결과 경기도 전체의 증가율 적용시 동두천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증가율이 과거추세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 10년간 교통약자 추이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교통약자 인구를 예측하였다.

<표2-38> 경기도 증가율 적용 동두천시 교통약자 전망

(단위 : 인,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07~2011년)
장 애 인	3,456	3,462	3,467	3,470	3,472	0.02	3.5
고 령 자	13,003	13,010	13,016	13,022	13,027	0.05	5.9
임 산 부	947	948	948	949	950	0.08	-
어 린 이	4,776	4,774	4,774	4,774	4,774	-0.01	-4.3
영 유 아	4,765	4,766	4,766	4,767	4,768	0.02	0.6
교통약자인구	26,895	27,229	27,566	27,913	28,277	0.03	2.2

주 : 1)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통계청」 경기도 증가율 적용
 2)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나. 동두천시 교통약자 인구 예측 결과

- 과거 10년간(2001년~2011년)교통약자추이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여 과거 교통약자의 특성을 시계열적 및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하였다.
- 과거 인구추이에 의해 각 모형식 각각의 교통약자의 인구추정결과를 R²값이 1에 가까운 모형식을 선택하였다.

<표2-39> 교통약자 모형식 적용 예측결과(장애인)

(단위 : 인)

년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최소자승법	지수곡선식	로지스틱식
2013년	4,167	4,849	4,010	4,555	3,533
2014년	4,413	5,443	4,272	4,889	3,603
2015년	4,660	6,111	4,534	5,228	3,657
2016년	4,906	6,859	4,797	5,572	3,699
R ²	0.89115	0.81301	0.88158	0.90138	0.69348

<표2-40> 교통약자 모형식 적용 예측결과(고령자)

(단위 : 인)

년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최소자승법	지수곡선식	로지스틱식
2013년	14,469	15,604	13,906	-	14,220
2014년	15,154	16,839	14,707	-	14,968
2015년	15,839	18,173	15,508	-	15,693
2016년	16,523	19,612	16,310	-	16,392
R ²	0.99465	0.94299	0.99515	-	0.98460

<표2-41> 교통약자 모형식 적용 예측결과(임산부)

(단위 : 인)

년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최소자승법	지수곡선식	로지스틱식
2013년	1,046	1,053	988	-	958
2014년	1,065	1,075	1,014	-	972
2015년	1,084	1,098	1,040	-	984
2016년	1,102	1,121	1,066	-	995
R ²	0.94584	0.95549	0.96092	-	0.80763

<표2-42> 교통약자 모형식 적용 예측결과(어린이)

(단위 : 인)

년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최소자승법	지수곡선식	로지스틱식
2013년	4,723	4,741	5,345	-	-
2014년	4,649	4,675	5,312	-	-
2015년	4,576	4,610	5,279	-	-
2016년	4,502	4,546	5,246	-	-
R^2	0.92000	0.90313	0.70125	-	-

○ 본 계획의 영·유아동반자 예측은 모형식 적용시 R^2 값이 80%이하로 모형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0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동두천시」에서 제시된 0~4세 인구 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표2-43> 교통약자 모형식 적용 예측결과(영유아동반자)

(단위 : 인)

년도	등차수열	등비수열	최소자승법	지수곡선식	로지스틱식
2013년	4,784	4,784	4,689	-	4,591
2014년	4,784	4,784	4,711	-	4,607
2015년	4,783	4,783	4,732	-	4,624
2016년	4,782	4,783	4,753	-	4,640
R^2	0.46770	0.46932	0.76234	-	0.49253

<표2-44> 2020 도시기본계획 인구전망

(단위 : 인, %)

연령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증가율	
						'10~'15	'15~'20
계	73,177	89,000	119,000	130,000	133,000	1.8%	0.5%
0~4세	4,351	5,133	6,276	6,796	6,818	1.6%	0.1%
5~9세	5,411	5,499	6,863	7,270	7,072	1.2%	-0.6%
10~14세	4,654	6,327	7,267	7,740	7,475	1.3%	-0.7%
15~19세	4,865	5,383	8,361	8,447	8,312	0.2%	-0.3%
20~24세	5,448	5,688	7,295	9,193	8,656	4.7%	-1.2%
25~29세	6,201	6,544	8,353	9,738	10,826	3.1%	2.1%
30~34세	7,230	7,454	9,017	9,978	10,000	2.0%	0.0%
35~39세	7,016	8,269	9,779	10,498	10,228	1.4%	-0.5%
40~44세	6,892	7,787	10,187	9,804	9,337	-0.8%	-1.0%
45~49세	4,913	7,354	9,037	8,956	8,070	-0.2%	-2.1%
50~54세	3,403	5,380	8,862	8,708	8,825	-0.3%	0.3%
55~59세	3,392	3,934	6,826	8,750	8,811	5.1%	0.1%
60~64세	3,636	3,845	4,989	6,673	8,242	6.0%	4.3%
65~69세	2,726	3,904	4,541	4,620	5,803	0.3%	4.7%
70~74세	1,693	2,866	4,356	3,827	3,772	-2.6%	-0.3%
75~79세	1,010	1,815	3,333	3,925	3,677	3.3%	-1.3%
80세이상	824	1,818	3,658	5,077	7,077	6.8%	6.9%

자료 : 2020 도시기본계획, 동두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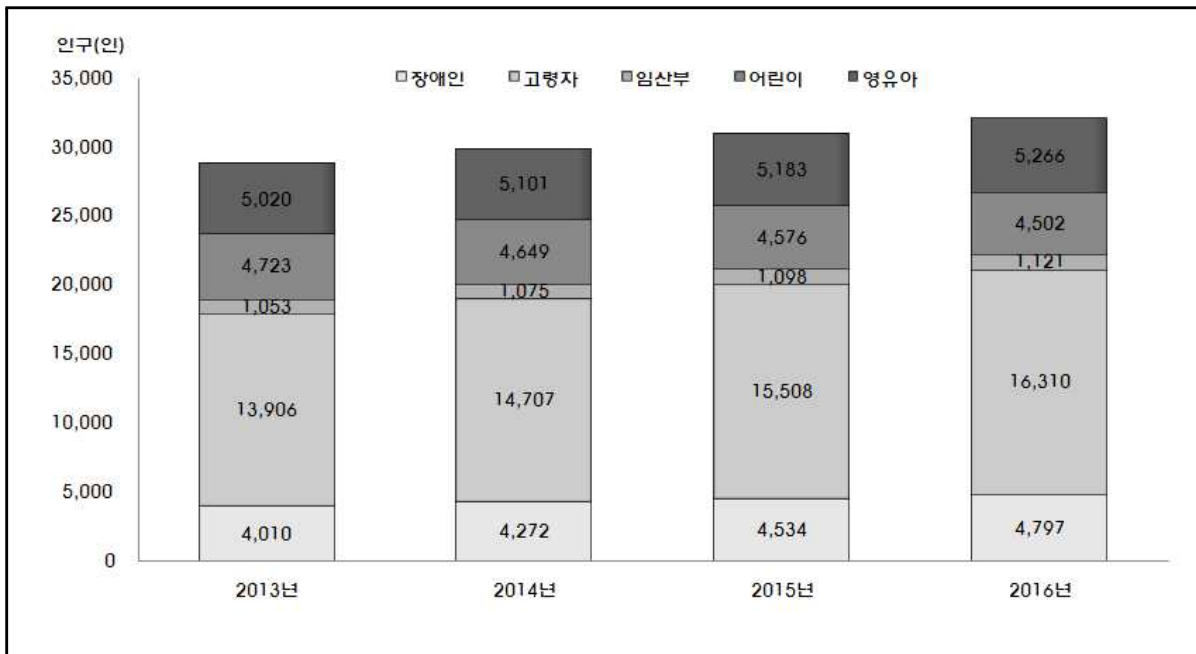
- 동두천시 교통약자인구를 예측한 결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는 각각 4.6%, 4.1%, 1.6%,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의 인구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전체 교통약자 인구는 2013년 28,712에서 2016년 31,996인으로 연평균 2.7%의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2-45> 동두천시 교통약자 전망

(단위 : 인)

구분	계획인구1)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2013년	인구	125,483	28,712	4,010	13,906	1,053	4,723	5,020
	구성비	100.0	22.88	3.20	11.08	0.84	3.76	4.00
2014년	인구	127,722	29,804	4,272	14,707	1,075	4,649	5,101
	구성비	100.0	23.34	3.34	11.51	0.84	3.64	3.99
2015년	인구	130,000	30,899	4,534	15,508	1,098	4,576	5,183
	구성비	100.0	23.77	3.49	11.93	0.84	3.52	3.99
2016년	인구	130,595	31,996	4,797	16,310	1,121	4,502	5,266
	구성비	100.0	24.50	3.67	12.49	0.86	3.45	4.03
증가율		1.0%	2.7%	4.6%	4.1%	1.6%	-1.2%	1.2%

주 : 1) 계획인구는 「2020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동두천시」 상의 계획인구임
 2) 장애인인구는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를 제외하였음



<그림2-17> 동두천시 교통약자 전망